

주요 국가의 외국인투자유치제도

백상호 · 임성훈 · 김덕준 · 오동화 · 김기학 · 유상원

2003. 1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실

머 리 말

지난 5년 전 예기치 못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을 참담하게 짓눌렀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량 실직 등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2년말 현재 가용 외환보유고는 1,200억불을 상회하는 등 우리 경제의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에 도착기준으로 52억불, 1999년 108억불이 유입되어 동 기간동안 증가된 가용외환보유고 총액 652억불 중 25% 정도를 기여하였다. 또한 신고기준으로 외환위기 이전(1962년부터 1997년말까지) 유입된 외국인투자액 246억불보다 외환위기 이후 5년(1998년부터 2002년까지) 동안 유입된 투자액은 600억불로 2배 이상이나 많았다. 따라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경제정책수단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일등공신으로 꼽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투자는 외환유입에 따른 외환안정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며, 외자유입국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국적기업의 우수한 경영노하우와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도 한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외자유치를 확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우리 나라도 외환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 모두가 여전히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게다가 거의 전세계 국가가 개방체제에 편입된 요즘 세계 각국은 온갖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외자유치전쟁을 벌이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향후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앞으로의 경제환경 변화와 달라진 세계투자환경을 반영하여 보다 국익에 보탬이 되고 국가경제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기도 하다.

동북아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높게 도약하기 위한 외자유치정책의 전환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 나라의 투자유치정책을 점검하고, 외자유치정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가들과 외자유치제도 및 환경을 비교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에 기획·발간하게 된 「주요 국가의 외국인투자유치제도」 보고서는 이런 배경과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외자유치의 현장에서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근무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주요 외자유치국가들의 제도와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외자유치정책수립 및 유치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소망의 결실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영국·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의 투자유치체제와 정책, 조세·노무·산업입지 등에 대해 현황비교와 함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白相浩 행정지원팀장이 기획과 총괄을 맡아주었고, 투자정책분야에는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의 金德準 위원과 투자전략팀의 林聖勳 박사, 노동분야는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의 金基學 위원, 세제분야는 吳東和 위원, 산업입지는 산업단지공단에서 파견근무중인 劉相源 상담역이 수고하였다. 투자유치지원활동에 잠시도 소홀히 하기 어려운 분주한 와중에서도 틈을 내어 보고서를 완성해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또한 이름도 없이 소기의 투자유치성과를 이루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종합행정지원실 직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보고서 내용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여겨지나, 외자유치 역사가 일천한 우리 현실에서 누군가가 초석을 깔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과 전문가를 양성해보자는 기대에서 이일에 착수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제한된 조건에서 시도된 노력의 한 자취임을 감안해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및 투자유치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보고서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진 내용과 금융지원·인력공급·훈련보조금·토지(차액보조금), 현금보조(Cash Grant) 및 사후관리제도 등 포함되지 못한 분야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발간의 변을 맺는다.

2003년 1월

종합행정지원실장

崔 平 洛

< 목 차 >

I. 서론	1
II. 외국인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비교	4
1. 각국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현황	4
1) 영국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4
(1) 투자유치정책	4
(2) 투자유치기관	5
(3) 투자지원절차	7
(4) 투자인센티브	7
※ 영국의 사후관리서비스 지원체제	9
※ 북아일랜드지역의 투자유치지원제도	11
2) 중국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2
(1) 투자유치정책	12
(2) 투자유치기관	13
(3) 투자지원절차	15
(4) 투자인센티브	19
※ 중국의 투자유치담당관 인센티브제도	23
3) 싱가포르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26
(1) 투자유치정책	26
(2) 투자유치기관	27
(3) 투자지원절차	29
(4) 투자인센티브	29
4) 말레이시아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32

(1) 투자유치정책	32
(2) 투자유치기관	32
(3) 투자지원절차	36
(4) 투자인센티브	37
5) 한국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39
(1) 투자유치정책	39
(2) 투자유치기관	43
(3) 투자지원절차	44
(4) 투자인센티브	46
※ 아일랜드의 투자유치진흥기관 IDA	48
2. 투자유치제도 특징 및 시사점	53
3. 한국의 투자유치제도 발전방향	55
Ⅲ. 산업입지제도	58
1. 각국의 산업입지제도 현황	58
1) 영국의 산업입지제도	58
(1) 개요	58
(2) 토지이용	58
(3) 투자 특별구역 운영현황	59
(4) 기업장려지구	59
2) 중국 포동신구의 산업입지제도	60
(1) 개요	60
(2) 토지이용	60
(3) 포동신구 주요 4개 개발소구	61
3) 싱가포르의 산업입지 제도	62

(1) 개요	62
(2) 토지이용	62
(3) 주룽도시공사	63
(4) iPark 21	63
4) 말레이시아의 산업입지제도	64
(1) 개요	64
(2) 멀티미디어 수퍼 코리더	64
(3) 투자유치 관련 산업인프라	66
5) 한국의 산업입지제도	66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	66
(2) 외국인투자지역	67
(3) 자유무역지역	68
(4) 관세자유지역	69
2. 산업입지제도 특징 및 시사점	70
3. 한국의 산업입지제도 발전방향	72
IV. 조세제도	74
1. 각국의 조세제도 현황	74
1) 영국의 조세제도	74
(1) 법인세	74
(2) 소득세	74
(3) 배당소득	75
(4) 자본이득세	75
(5) 상속세	76
2) 중국의 조세제도	76
(1) 기업소득세	76
(2) 개인소득세	77

(3) 부가가치세	78
(4) 사업세	78
(5) 소비세	78
(6) 농업세	79
(7) 인지세	79
(8) 도시부동산세	79
(9) 자동차 및 선박세	79
3) 싱가포르의 조세제도	80
(1) 법인세	80
(2) 개인소득세	81
(3) 재산세	82
(4) 물품과 서비스세	82
(5) 인센티브제도	82
4) 말레이시아의 조세제도	83
(1) 개요	83
(2) 법인세	84
(3) 개인소득세	85
(4) 원천징수세	85
(5) 양도소득세	86
(6) 판매세	87
(7) 인센티브제도	87
5) 한국의 조세제도	88
(1) 법인세	88
(2) 소득세	88
(3) 부가가치세	89
(4) 증권거래세	90
(5) 특별소비세	90
(6) 관세	90
(7) 교육세	90
(8) 농어촌특별세	91
(9) 취득세	91

(10) 등록세	91
(11) 주민세	92
(12) 재산세	93
(13) 종합토지세	93
(14) 사업소세	93
(15)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94
2. 조세제도 특징 및 시사점	95
3. 한국의 조세제도 발전방향	97
V. 노동제도	98
1. 각국의 노동제도 현황	98
1) 영국의 노동제도	98
(1) 노동정책	98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98
(3)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99
(4) 노동쟁의 조정절차	99
(5) 경영참가(노사협의회)제도	99
(6)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100
(7) 임금 및 복리후생	100
(8) 정리해고	101
(9)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101
(10) 비정규직 근로자	101
2) 중국의 노동제도	102
(1) 노동정책	102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03
※ 노동조합(公會) 현황	103
(3) 단체교섭	104

※ 중국의 노동쟁의 추이	104
(4) 노동쟁의 조정절차	105
(5) 근로자 고용	105
(6) 근로계약 및 수습기간	106
(7)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수당	107
(8) 휴일 및 휴가제도	107
(9) 임금결정 및 최저임금제	108
(10) 업무상 질병·부상 처리	108
(11) 고용계약의 종료(퇴직, 해고, 해고예고)	109
(12) 정리해고	110
(13)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110
3) 싱가포르의 노동제도	111
(1) 노동정책	111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11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12
(4) 노동쟁의 조정절차	112
(5)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113
(6) 임금 및 복리후생	113
(7) 고용의 종료 및 정리해고	114
(8)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114
4) 말레이시아의 노동제도	115
(1) 노동정책	115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16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17
(4) 단체행동과 직장폐쇄	117
(5) 노동쟁의 조정절차	118
(6) 근로자 고용(고용계약, 수습기간)	118
(7)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119
(8) 임금 및 수당	119
(9) 고용계약의 종료(계약해지, 해고예고)	120
(10) 정리해고	121

(11) 퇴직금 및 정리해고수당	122
(12)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122
5) 한국의 노동제도	123
(1) 노동정책	123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23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24
(4)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124
(5) 노동쟁의 조정절차	125
(6) 노사협의회제도	125
(7) 근로자 고용	125
(8)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126
(9) 임금 및 수당	127
(10) 고용의 종료(퇴직, 해고)	127
(11) 정리해고	128
(12)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128
2. 노동제도 특징 및 시사점	129
1) 노동정책	129
2) 노사분규	130
3) 노동쟁의 조정제도	131
4) 근로자 고용	132
5)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133
6) 임금 및 수당	134
7) 정리해고	135
3. 한국의 노동제도 발전방향	136
VI. 결론	137

< 표 목차 >

< 표 II-1 >	외자투자기업 설립절차 및 관계기관	19
< 표 II-2 >	기타 투자유치 유관기관	28
< 표 II-3 >	싱가포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현황	31
< 표 II-4 >	MIDA 해외사무소 현황 및 지위	35
< 표 II-5 >	연대별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2
< 표 II-6 >	조세감면제도의 변화	47
< 표 II-7 >	각국의 투자통계 비교시 유의사항	52
< 표 II-8 >	주요국 투자유치 배경, 정책목표, 정책수단 비교	54
< 표 III-1 >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71
< 표 IV-1 >	법인세율	74
< 표 IV-2 >	소득세율	75
< 표 IV-3 >	신탁자(Trusts)에 대한 소득세율	75
< 표 IV-4 >	자본이득세율	76
< 표 IV-5 >	각 개발구별 세율	77
< 표 IV-6 >	개인소득세율	78
< 표 IV-7 >	자동차 및 선박세(액)율	80
< 표 IV-8 >	원천징수세율	81
< 표 IV-9 >	소득세율	81
< 표 IV-10 >	싱가포르의 투자인센티브제도	83
< 표 IV-11 >	석유소득세율	84

〈 표 IV-12 〉	소득세율	85
〈 표 IV-13 〉	원천징수세율	86
〈 표 IV-14 〉	양도소득세율	86
〈 표 IV-15 〉	말레이시아의 투자인센티브제도	87
〈 표 IV-16 〉	법인세율	88
〈 표 IV-17 〉	소득세율	88
〈 표 IV-18 〉	원천징수세율	89
〈 표 IV-19 〉	교육세율	90
〈 표 IV-20 〉	농어촌특별세율	91
〈 표 IV-21 〉	등록세율	92
〈 표 IV-22 〉	주민세율	92
〈 표 IV-23 〉	재산세율	93
〈 표 IV-24 〉	사업소세율	93
〈 표 IV-25 〉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혜택	94
〈 표 IV-26 〉	각국의 조세제도 비교	95
〈 표 V-1 〉	각국의 노동정책 비교	129
〈 표 V-2 〉	각국의 노사분규 비교	130
〈 표 V-3 〉	각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 비교	131
〈 표 V-4 〉	각국의 고용제도 비교	132
〈 표 V-5 〉	각국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비교	133
〈 표 V-6 〉	각국의 임금제도 비교	134
〈 표 V-7 〉	각국의 정리해고제도 비교	135

< 그림 목차 >

< 그림 I-1 > 본서의 구성	3
< 그림 II-1 > EDB 관련 조직	27
< 그림 II-2 > MIDA의 조직구조	34
< 그림 II-3 > 말레이시아 투자인센티브 결정절차	39
< 그림 II-4 > KISC의 조직구조	44
< 그림 II-5 > IDA의 조직구조	51

I. 서론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현지국에 대해 외환유입, 지역개발, 고용창출, 산업구조고도화, 선진경영기법 습득 등의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에 외환의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의 외국인투자를 주목하고 외환유입수단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음
 - 그 결과 FDI(도착기준)가 이듬해인 1998년에 52억불, 1999년에는 104억불로 급증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2년(1997. 12~1999. 12)동안 증가된 가용외환보유고 652억불중 24%나 기여하였고, 현재 외환보유고 1,200억불 시대를 여는데 주역이 되었음
- 외국인투자의 개념을 “해외 우수한 경영관리능력 및 기술력을 가진 다국적기업이 직접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 외국인투자 유입효과 중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는 외환유입, 지역개발, 고용창출 등이 있으며, “외국인(다국적기업)”이 강조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는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의 기술력, 경영관리능력 강화, 시장경쟁의 투명성(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들 수 있음
 - 정부는 현재 외환위기 이후 전자에서 후자로 정책목표를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재정부의 “동북아비즈니스중심지계획”, 산자부의 “세계R&D 허브센타 구축” 등은 그 예라 할 수 있음
- 이렇듯 외국인투자정책은 경제정책의 하부시스템으로서 현지국이 직면한 경제 현안을 달성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투자정책이란 경제정책과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목적을 설정하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 즉,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정책은 기업의 전략수립과정과 마찬가지로 경제환경, 투자환경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정책의 목표인 고용창출, 외환안정, 산업구조고도화, 수출경쟁력강화, 지역개발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이에 부합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하겠음

□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인투자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이 각 나라가 어떠한 방법으로 적합성(Fitness)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 및 체계에 대한 점검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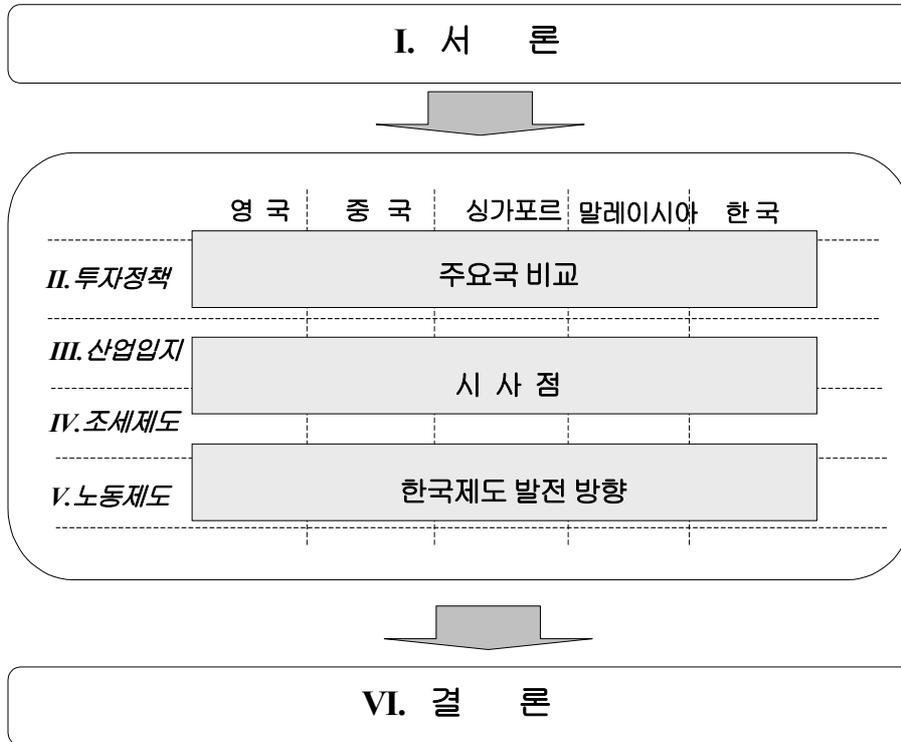
- 이러한 논의는 외국인투자정책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외환위기 극복수단으로 활용된 외국인투자정책의 향후 운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이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본론에서 각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이들로 부터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에 근거한 한국의 투자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관련제도에 대해 (i)투자정책 (ii)산업입지 (iii)조세제도 (iv)노동제도 등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기술함
- 또한 투자정책은 각국의 투자정책 변천과정, 투자기관, 투자지원절차, 인센티브 제도로 다시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산업입지는 각국의 대표적인 산업공단을 설명함
- 조세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제세에 대해 기술하며, 노동제도는 크게 노사관계와 근로조건으로 양분하여 기술함
- 이 보고서는 벤치마킹분석대상으로 영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4개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투자정책분야에서 아일랜드 등 분야별로 투자유치제도의 모범사례로서 꼽히는 국가를 상황에 따라 추가·보완하여 분석함

< 그림 I-1 >

본서의 구성



II. 외국인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 각국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현황

1) 영국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 투자유치정책

□ 1970년대 전통적 산업인 석탄, 철강, 조선산업의 사양화와, 이에 따른 실업증가, 노사분규 격화 등으로 국내경기 및 제조업분야가 위축되자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음.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정책은 고용유발적 투자,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에 최우선과제를 두고 있음

- 국내 투자의 부족분을 외국인투자유치로 보충할 목적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꾸준히 유치한 결과 외국인투자업체수는 총업체수의 1%에 불과하나 제조업체 고용인구의 18%, GDP의 24%, 국내 총 순자본지출의 32%, 수출의 40%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 영국은 투자매력지로서 천연적 자원보다 제도적 장치를 인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채택함. 즉 투자자가 투자한 총자본비용 중 평균 15% 이상을 보조함으로써 EU 회원국 중 가장 유리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이 31%로 주요 EU 회원국(독일 50%, 프랑스 34%, 이태리 36%)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그룹형태로 기업을 운영할 경우 자회사간 손실이전을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를 갖추고 있음

□ 영국의 투자유치는 지방정부 지역상호간 투자유치 경쟁체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영국이 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임. 영국은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각 지역이 개별 국가처럼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함

(2) 투자유치기관

- 영국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소속의 Invest UK(구 IBB)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북아일랜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제반투자를 지원하는 12개의 지방 투자유치기관이 있음.
 - Invest UK는 1977년 설립되어 외무부 및 통상산업부 소속의 IBB(Invest in Britain Bureau)를 2002년 5월 영국 대외무역청(British Trade International)에 편입시켜 명칭을 개정하여 출범하였음
- Invest UK의 역할은 투자유치정책의 기획 및 전국적 차원의 투자유치활동 총괄, 영국내 12개 개발기구(RDA)간 투자유치 과당경쟁 방지 및 업무조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D/B관리 및 모니터링, 지역선택 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지급결정 등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 각종 투자촉진활동 전개 : 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잠재적 투자자가 영국의 기업환경을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투자여건 및 투자지원제도를 설명하는 잠재 투자자 영국 방문 초청 행사(Inward Mission)를 기획함. 이때 투자사절단 참가업체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영국내 여행경비 등 일체를 Invest UK에서 부담함. 또한 세미나 개최,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의 활동도 전개하고 있음
 - 투자 최적지 안내 및 각종 자문서비스 제공 :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① 각 지역별 가용인력수준·주변산업·용수공급·원자재 조달·주력시장과 근접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투자여건을 비교 분석하여 투자최적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② 영국내 회사설립방식·설립방법·공장부지 선정·공장건축 등 회사 설립 및 원부자재 구입 등 실제 회사가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함. ③ 국가 및 각 지방별 자금지원, 세제·교육훈련 등 투자인센티브 안내서비스 등도 제공함
 - 대형프로젝트인 경우 지역개발기관과 업무 협조 : 투자인센티브 공여를 비롯한 원스톱서비스는 해당지역 투자유치기관인 지역개발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나, 투자규모가 클 경우에는 Invest UK가 직접 지역개발기관과 협의를 거쳐 각의에 상정하는 등 내각 차원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

- 유관기관 접촉 주선 : 투자자와 중앙정부의 각 부처, 지방정부, 국영기업 및 가스·전력·수도 및 통신서비스 제공업체들간 접촉을 주선함(환경, 노동문제 등 전반적인 법률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접촉을 주선)
 - 각 지방자치단체간 과당경쟁 방지 및 업무조정 : 이를 위해 Invest UK를 비롯하여 영국 투자유치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각 지역 투자유치기관 관계자들은 해외투자촉진위원회(COP : Committee on Overseas Promotion)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Invest UK은 지역편제로서 아태지역팀·유럽팀·미주팀 등 지역관할부서와 자료발간, Web Site 운영 등 마케팅팀,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팀으로 구성됨
- 해외조직으로 35개국 투자유치 거점지역 소재 대사관에 70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총 14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구는 투자유치 및 기타 종합적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Invest UK에 비해 조직이 거대함(WDA는 550명, IDB는 350명)
- 영국내에는 지역별로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관이 설립되어 상호 경쟁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실정임
- 잉글랜드지역은 과거 NDC(Northern Development Company)를 비롯한 10개의 지역개발기구(RDO : Reg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를 RDA수준으로 승격시킨 One Northeast가 있으며 웨일즈에는 WDA(Welsh Development Agency), 북아일랜드에는 IDB(Industrial Development Board for Northern Ireland), 스코틀랜드에는 LIS(Locate In Scotland) 등 자체 개발기관을 두어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극심한 실업문제와 낙후된 지역개발수준, 영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투자인센티브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투자인센티브 결정 등 독자적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도 중앙정부와 거의 별도로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투자지원절차

- Invest UK는 해외 영국대사관에 접수된 투자의향서를 런던 본부에서 접수한 후 투자신청자의 해당, 산업분야, 투자계획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후보지 몇개를 선정하고 각 지역개발기관에게 투자자를 익명으로 하여 투자타당성 조사를 의뢰함. Invest UK 본부로부터 의뢰 받은 지역개발기관은 직접 투자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관할구역내 소지역 단위의 지방개발기관에 의뢰하여 투자여건을 조사함. Invest UK는 이를 취합하여 잠재적 투자자에게 2~3개의 적격지를 통보함(보통 3~4주 정도 소요)

- 잠재적 투자자가 투자적격지 추천을 수락하면 해당 지역개발기관이 투자지원 업무를 이양 받아 해당 지역개발기관은 투자실행 및 실행이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행정관련 업무를 지원함. 투자가 종료되면 해당 지역개발기관은 투자내용에 대해 Invest UK에 보고함

(4) 투자인센티브

- 영국의 투자인센티브의 특징은 세금감면이 아닌 직접 보조금 지급형태라는 점과 수혜범위를 투자자와 협상하여 정한다는 것임
 - 일반적으로 보조금 형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되는 지역선별보조금(RSA :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과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패키지(Local package)로 나눌 수 있음
 - 평균적으로 전체 투자인센티브에서 RSA가 70%를 차지하고 인센티브 패키지가 30%를 차지하는데 전체 투자금액중 총인센티브 수여비중은 40%로 제한됨(웨일즈의 경우에는 평균 35%정도이며 최대 한도는 50%임)

- 지역선택보조금은 석탄·철강·조선 등 전통산업의 사양화로 야기된 대량 실업문제 및 낙후지역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자인센티브제도로(내외국 기업불문), 지급되는 보조금은 투자기업의 공장·사무실 부지구입비, 건축비·플랜트 기계설비 소요비용 등 자본비용(Capital Cost)에 사용됨
 - 수혜대상지역 : 집중개발지역(DA : Development Areas)과 준개발지역(IA : Intermediate Areas)으로 실업률, 지역의 낙후성, 국가정책상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 세 가지 사항이 복합되어 고려됨

- 수혜요건 : 집중개발지역 및 준개발지역내 투자업체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투자업체가 경제적인 자립능력이나 가능성이 있을 것
 - 해당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
 - 해당지역의 경제 및 국가재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투자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것 등임

- 지급기준 : 보조금 지급기준은 개별투자자와의 사안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보편적으로 고용창출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대개 신규 고용창출 1인당 5,000~6,000파운드 수준임. 기타 반도체, 첨단화학 제조 설비투자 등 고자본 투자시에는 고용창출능력 이외에 설비구입 등 자본투자규모를 감안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함

- 수혜방법 : 보통 3회에 걸쳐 분할 지원되는데 계약서상의 투자진척도, 고용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며, 당초 계약과 달리 투자가 부진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기도 함

- 재원 : 대부분이 정부예산이며, 기타 EU 집행위의 교부금·각종 민간기업의 지원금 등임(대외비 사항으로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고 있지 않음)

- 심사주최 : 잉글랜드를 제외한 웨일즈·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지역은 투자유치업무의 독자성이 강하여 WDA 등 각 지역개발기관이 RSA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100만 파운드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형 프로젝트일 경우에 한해 통상산업부의 승인이 필요함. 특히 지역 전체가 집중개발지구로 지정된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RSA를 고정자산이 아닌 사업운영비로 전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과 달리 RSA를 투자기업의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아 과세대상에 제외시키는 파격적인 RSA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RSA와 달리 지방정부 패키지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독자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로서 채용 및 교육훈련비·임대료 감면,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부여함. 지역별로 차등적이며 중앙정부는 지역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공통적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지방정부 패키지는 산업부지 및 공장시설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다음은 영국의 사후관리서비스 지원체제 및 북아일랜드 지역의 투자 지원제도임

※ 영국의 사후관리서비스 지원체제

(i) 사후관리서비스 현황

□ 영국의 경우 사후관리서비스(After Care Service)를 신규투자지원의 연결 선상에서 접근하여 투자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전담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사후 서비스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음

- 사후관리 서비스는 Invest UK와 각 지역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Invest UK와 지역개발청은 영국에 이미 투자한 기업의 모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1년에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게 하여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동시에 추가투자를 유도하게 하고 있음
- 각 지방의 경제개발청은 이미 진출하여 조업중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설립 이후에도 직원을 파견하여 사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투자기업의 근무복 차림으로 상주하며 해당기업이 원하는 기간만큼 파견하고 있음
- 주로 투자기업의 원활한 부품 조달을 위해 자국 기업과 연결하는 업무를 하며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개발청 또는 지방정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은 지역개발청에서 지불하고 있음

(ii) 영국의 고충처리기구

□ Invest UK는 고충처리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활동상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IDP(Investors Development Programme)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수집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은 관련지방정부 및 기관으로 전달되어 검토됨
 - 이때 제기된 사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 및 관련기관과 협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고충처리에 대한 해결상황이나 결과는 제기자에게 반드시 회신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정부는 외국인투자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각각 별도의 독립된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잉글랜드지역의 지역개발청은 대체적으로 Invest UK의 고충처리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음. IDP는 투자업체의 애로, 건의사항 청취, 관련기관과 접촉하여 해결모색을 위한 중재 및 보고, 처리결과에 해당업체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 북동잉글랜드 개발청(One NorthEast, 과거의 NDC)은 투자유치 담당자별 8~12개사의 투자기업을 전담하게 하여 각종 민원이나 고충, 불만, 건의사항을 수시로(최소한 6개월에 1회) 점검 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불만이나 고충이 제기된 경우는 담당직원이 관련기관을 직접 접촉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웨일즈도 북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청의 원스톱서비스 지원차원에서 고충처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충처리 기구는 두고 있지 않음
 - WDA는 팀 웨일즈(Team Wales)라는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프로젝트 담당자가 8~10개의 기업을 맡아 사후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투자유치기관과 달리 LIS내에 사후서비스팀을 두어 고충처리를 포함한 사후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투자유치 담당자와 사후처리 담당자가 분리하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사후관리지원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역시 옴부즈만(Ombudsman)제도 등 고충처리제도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는 두고 있지 않음

※ 북아일랜드지역의 투자유치지원제도

- 투자자금 무상지원 : 국제적으로 유망한 사업으로 북아일랜드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공장건설비(부지포함), 기계설비 구입비의 최고 50%까지 IDB에서 무상지원(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면제)
- 고용보조금 : 북아일랜드에 투자함으로써 신규 창출되는 고용인력 1인당 약 2,000~3,000 파운드를 지원하며, 동 자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전환이 가능. 지원기간은 3년이며 고용인력규모를 IDB가 보장하는 경우 3년분의 보조금을 일시에 지원 가능
- 운영자금 무상지원 : 공장임대시 임대료의 100% 범위내에서 5년간, 비정부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7년간 금리를 보조하며, 고급경영 인력 채용시 경영인센티브 보조금을 지급
- 공장건설 및 대여 : IDB의 소유부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공장을 건축, 실비로 매각하거나 장기로 임대
- 세제 혜택 : 사업개시 최초 년도에 기계·설비·공장건설비의 40% 감가상각을 허용하며, 이후에는 기계설비에 대해서 연간 25%, 공장건설비에 대해서는 연 4% 감가상각을 허용
- 종업원 교육훈련 지원 : IDB 방계기관으로 훈련고용청을 설립, 북아일랜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채용 전 훈련프로그램 마련, 훈련센터 제공, 기술자 파견 등 종업원 교육을 전반적으로 지원

2) 중국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 투자유치정책

□ 중국은 국내경제 및 산업구조와 유기적 결합을 추진하기 위해 외자를 도입하고 있음

- 즉, 기존의 가공산업 및 부동산업 위주에서 탈피, SOC 기반시설·하이테크 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개방폭의 단계적 확대 및 규제대상분야를 점차 완화시킴
- 정부의 “서부대개발”정책에 따라 연해지역의 지속적인 외자유치와 더불어 중서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 우대제도로써 세금감면 중심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특정지역(경제특구, 개방구, 하이테크개발구 등)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자원개발, 농업투자,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해 경제특구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중국 각 지역의 현황에 따라 지역별로 중점 투자유치분야가 다른데, 지역별 중점분야는 다음과 같음

- 장쑤성·저장성·상해시 등 화동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업화가 상당히 진행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책적으로 환경보호설비와 재생자원 이용 및 오염방지기술도입에 적극적임
- 상해는 자동차·통신설비·대형기전설비·석유화학·미세화공·가전기기·철강공업 등 6대 산업에 대해 중점을 두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포동신구 및 외고교보세구(外高橋保稅區)에 진출한 무역업 및 포장·창고·컨설팅업을 외자유치 중점분야로 명문화함으로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무역업 투자유치를 통해 대외무역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저장성은 유기농 식품, 전자상거래, 물류업 등을 외자유치 중점분야에 포함하고 있음
- 북경과 톈진시는 도시재개발을 위한 교통, 에너지 부문의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중이며, 특히, 하이테크기업 투자유치를 우선시하고 있음
- 광둥성은 고속도로·지하철·항구·부두 등 교통인프라 건설관련 외자유치에 적극적임

□ 또한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미진한 서부지역에 대해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중임

- 동부 연해지역은 자금, 기술집약형 산업 및 수출형 산업기지로 발전시키며 중서부지역은 적극적 개방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추진 중
- 해외우대 차관 중 중서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60%에서 70%로 늘리고 외자 기업에 대한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을 확대함
- 중서부지역내 외국인투자분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조건 및 주식보유비율 등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할 예정임
 - 성별 외국인투자 인허가 권한을 현재 3천만불이하에서 5천만불이하로 확대
 - 수출입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완화
 - 서부지역에 투자한 외투기업의 운송비 및 제비용을 보상
 - 각 1개 성 및 시에는 2~3개의 보세구를 설립, 외자를 추진
 - 서부지역 공업기지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소득세 징수조건 완화

(2) 투자유치기관

□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법률에는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동법 실시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동법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및 동법 실시세칙,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에 관한 잠정규정이 있음

- 이러한 법령은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익보호, 투자기업의 설립허가, 운영기관 및 권한, 기업설립후 수속등록사항, 투자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산업발전 정책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는 장려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外商投資方向指導暫定規定” 및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 정책의 수립과 집행, 투자상황의 분석보고, 실적집계 업무는 국무원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담당

- 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와 일정한 출자관계있는 자로부터의 5년 이상 장기 차입금만을 외국인직접투자실적집계에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 상급 은행으로 부터의 1년이상 5년미만의 차입금도 실적집계에 포함시키고 있음

□ 모든 외국인투자는 중앙정부(국무원) 또는 지방정부(성, 직할시 등)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됨

- 외국인투자 심사승인과정은 프로젝트건의서 및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에 대한 업종별 주무부서 및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심사승인절차와 계약서 및 정관에 대한 대외무역경제 주무부서의 최종심사 승인절차로 나누어 짐. 특히, 신규 기반건설프로젝트에 관한 프로젝트건의서 및 타당성검토보고서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심사승인을 담당하며 기존 기업의 개보수를 위한 프로젝트의 심사승인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담당 하고 있음

-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정부가 심사허가권한을 가짐

- 투자사업이 제조업으로서
- 총투자금액이 국무원이 정한 금액(현재 3천만불) 미만이며
- 중요 원자재, 에너지, 교통운수 등 국가전체의 수급조절이 필요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 국가의 종합적인 외환수급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생산수출제품이 쿼터관리나 수출허가대상 품목이 아님

□ 투자유치활동은 지역마다 투자유치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상해의 경우 상해시외국투자촉진중심(上海市外國投資促進中心)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

- 상해시 투자유치 창구로 시전체의 투자유치활동을 전담
-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정책자문
- 잠재투자가 발굴 등 국가차원의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및 공단안내 서비스 제공

(3) 투자지원절차

□ 외상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회사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업종·투자규모·사업성격에 따라 투자절차, 특히 심사승인(심사비준) 절차와 담당기관이 달라짐

-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설립절차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이 외국인투자사업의 필요성, 경제적·법률적 타당성까지 심사비준하며, 또한 투자기업 설립 후에 출자금 변경 등을 통한 사업규모 변경시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확장·축소에 대한 결정을 투자당사자 및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이함

□ 중국정부는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을 제정하여 장려, 제한, 금지 업종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음. 금지업종은 외국인투자가 되지 않으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허가업종으로 분류되어 각 지방정부의 외자심사절차를 거쳐 투자가 승인됨

□ 2002년 4월에 발표된 새로운 목록에 따르면

- 금지업종항목은 국가안전·환경·천연자원보호·전통산업보호·국론분열 방지 등을 위해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업종항목으로, 10개 업종 34개 항목이 있음

- 제한업종항목은 중국내 생산능력이 충분하여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술개발이나 기술도입이 완료되었거나, 불필요한 13개 업종 75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장려업종항목은 중국측이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를 희망하는 13개업종 26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산설비 면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짐
- 농업·임업·축산·수산업종(11개 항목), 채광·채석업종(11개 항목), 제조업종(22개 부문 196개 항목), 전력, 가스, 수력 생산·공급업종(8개 항목) 수자원 관리업종(1개 항목), 통신·운수·창고·우편·전자통신업종(13개 항목), 도소매업종(1개 항목), 부동산업종(1개 항목), 사회서비스업종(2개 부문 5개 항목), 보건·스포츠·사회복지업종(1개 항목), 교육·문화·예술·방송·영상·TV업종(1개 항목), 사회적연구·복합기술서비스업종(12개 항목), 완전수출형 허용 항목
-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신청의 심사비준과정에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설립신청을 인가하지 않음(외자기업법 시행세칙 제5조,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4조,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제7조 참조)
 - 중국의 주권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해를 끼칠 경우
 - 중국의 법률 및 법규(또는 산업정책)를 위반할 경우
 - 중국의 경제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 체결한 계약서, 정관이 공평성을 잃어 합자자의 권익을 해할 경우(합작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는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합자회사설립의 경우 투자당사자간의 투자협의를 내지 의향서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제1단계(심사비준단계) : 프로젝트(항목)건의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계약서·정관의 심사비준
 - 외상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중국정부기관의 심사비준과정은 일반적으로 ① 프로젝트건의서의 심사비준 ②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의 심사비준 ③ 계약서·정관의 심사비준의 순서로 진행됨

- 제2단계(기업설립단계) : 등기등록, 영업허가증(영업집조) 취득
 - 설립등기, 영업허가증발급 : 비준증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지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공상국)에 등기수속을 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하며 이 영업허가증 발급일이 기업설립일이 됨
 - 합자, 합작, 외자기업의 경우 (최저등록) 자본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등기 가능

- 제3단계(출자준비단계) : 해관, 세무, 외환관리부문 등의 등기등록 수속
 - 출자준비단계 : 투자기업 설립 이후 외상투자기업의 출자이행, 재정세무, 외환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설립 즉시 다음과 같은 수속/등기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음
 - 조직기구코드(기업대마) 등기, 외환관리등기·외환계좌개설, 세무등기(사업자등록), 재정등기(자본·장부·재정에 관한 연도검사근거), 세관등기, 인장등록 등이 필요(세무등기를 제외한 다른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 외국투자자의 현금출자를 위해서는 외환관리국에 외환관리등기를 하고 외환업무 취급은행에 외환계좌 개설이 필요
 - 위 등기수속절차는 기업의 설립등기 및 영업허가증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함

- 제4단계(출자단계) : 출자액의 불입, 현물출자의 이행, 출자증명서의 발급
 - 토지대금 등의 회사설립준비자금은 프로젝트건의서에 대한 비준을 받은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가등기한 법인명칭으로 은행에 임시 외환자본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취하며 동계좌는 영업허가증 취득 후에 외환자본금 계좌로 전환됨
 - 잔여자본금은 영업허가증 취득 및 외환관리등기 후에 개설된 외환자본금계좌로 송금, 수취하게 됨

- ※ 최저등록자본제 : 회사법상 10만내지 50만위안, 외상주식유한회사의 경우 3천만 위안

-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일정비율(1/3 내지 7/10) 이상이어야 함
- 출자기한이 계약서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비준/등기 거부됨
- 등록자본의 출자기한은 다음과 같음

<현금/현물출자의 경우>

- 계약서 또는 정관상 1회 완납조건 : 영업집조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자
- 계약서 또는 정관상 수회분납조건 : 최초 출자는 인수액의 15%이상으로 3개월 이내에 출자
- 수회분납조건시 완납기한 : 등록자본금이 1천만불 이하인 경우 금액에 따라 1년 이내부터 3년이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심사비준기관에서 심사확정)
- 출자의무이행자로부터 1개월이내에 출자/출자완료요구를 받은 위약자가 기한내에 출자완료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의 모든 권리 상실, 자동철회로 간주

<중국 국내기업의 자산/지분을 매수하는 경우>

- 출자의무이행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출자완료 요구를 받은 위약자가 기한내에 출자완료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의 모든 권리 상실, 자동철회로 간주
- 외국투자자는 영업집조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심사비준기관의 비준시 1년 이내)에 매수가액을 완납해야 함. 매수총액을 완불하지 않은 대주주는 경영권 취득불가
- 상기 출자기한 이내에 출자 않는 경우 자동해산 간주됨
(비준증서효력 자동 상실, 등기말소 및 영업집조 등 소각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영업집조 폐기, 공고)

- 출자증명서 발급 : 공인회계사의 출자검사보고서 발행, 투자허가기관, 공상행정관리국의 출자증명서발급(현물 및 무형자산 출자의 경우 투자자가 합의한 자산평가명세서 및 협의서류 첨부, 외국측 현물출자시 상품검험국의 검사보고서 첨부제출 필요)
- 과실송금 및 투자금 회수절차 :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해외송금은 외환당국의 허가없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구좌개설은행을 통해 송금하며, 투자과실 및 투자회수금 등 자본거래는 외환당국의 사전허가 필요(구비서류 :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의사결정서 및 납세증명서). 외국인종업원이 수령한 임금의 50%를 초과한 금액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금지(초과 송금시 외환관리국의 허가 필요)

절차	당사자·관계기관	비고
투자협의를서 작성	투자당사자	
프로젝트건의서 심사비준	국가·지방발전계획위원회 국가·지방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청(국) 개발구관리위원회(경제무역발전국)	합자·합작프로젝트의 성격 (기초건설·기술개조·기타), 규모(3000만불), 소재지에 따라 심사비준기관이 달라짐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비준 국가권장항목확인서 발급	국가·지방발전계획위원회 국가·지방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청(국) 개발구관리위원회(경제무역발전국)	위와 같음
기업명칭 예비등록수리	공상행정관리국	
계약서·정관 심사비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청(국) 개발구관리위원회(경제무역발전국)	단독투자시 사업타당성 보고서와 정관을 동시에 제출
기업설립등기(공상등기) 영업허가증 발급	공상행정관리국	
조직기구코드발급 외환관리등록 외환계좌개설 세무등록 재정등록 세관등록 통계등록	기술감독국 외환관리국 분국 외국환은행 소재지 국가세무국/지방세무국 재정기관 관할 세관 통계국	
출자금 외화송금 현물·무형자산 출자승인 출자검사보고서 발급 출자은행감독·출자증명서 발급	외국환은행 외환계좌 상품검험국·심사비준기관 공인회계사 심사비준기관·공상행정관리국	현물 및 무형자산출자의 경우 투자당사자가 합의 한 자산평가명세서 제출 필요
과실송금·투자금 회수승인	국가외환관리국	

(4) 투자인센티브

- 중국은 각 지방정부마다 독자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해지방정부의 포동신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i) 분야별 초기투자비용 보조(Cash Grant)

□ 개요

- 기준 및 관련규정 : “포동신구 재정지원과 경제발전에 관한 의견” (2000.10.31)

- 지원대상

- 하이테크기술, 과학기술개발 프로젝트 및 개발성과의 상품화, 과학기술서비스 등 위주이며, 기타 유통업·관광업 등 지역투자 및 서비스분야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에 혜택
- 외국기업 여부를 불문하나(외국계기업은 별도로 법인세 감면혜택 부여), 영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전에 청산시 지원금액 전액 반환
- 상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부동산, 투자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신설기업은 연간 이윤총액의 14%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2년차 및 3년차에서는 7%를 지원

- 지원방식 : 투자기업이 초기에 획득한 수익의 일정부분에 대해 보조금 지급

수익 종류	보조금 지급율(%)	지급기간
부가가치액	2.0 ~ 2.5	- 정상 보조 2~3년 - 기한 연장시 지급률 단계적 축소
영업수익	2.0 ~ 14.0	
이윤	14.0 ~ 18.0	

- 각 공단별 특성에 따르는 추가 지원 : 상기 의견을 골간으로 하되, 포동내 각 개발구 (장강하이테크개발구, 금교수출가공구 등)에 개별규정을 두어 추가지원
- 한시적 지원 :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 2001~2005년까지 지원
- 투자 신고시의 기업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전에 철수 및 청산시 기 지원금 전액회수

□ 업종별 주요 지급형태

- 해당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컴퓨터 정보, 현대생물 및 의약, 신소재산업에 해당하는 신제품 등
 - 3년 이내의 부가가치, 이윤총액에 대해 각각 4%와 14%의 보조금 지급
- 개발 생산한 소프트웨어제품, 직접 제조한 IC제품 및 신규 인정을 받은 하이테크기술의 상용화프로젝트
 - 3년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액, 영업수입, 이윤총액에 대해 각각 4%, 5% 및 14%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3년 경과시 기 지원금의 50%를 계속 지급
 - 이중 해당기업이 직접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술에 대한 상용화프로젝트의 경우 5년 동안의 부가가치액, 영업수입, 이윤총액에 대해 각각 4%, 5% 및 14%의 보조금을 지급
 - 이들 보조금의 10%는 포동신구 과학기술발전기금 명목으로 회수
- 신규 인정받은 하이테크기업
 - 2년 동안 시현한 부가가치액, 영업수입, 이윤총액에 대해 각 4%, 5%, 및 14%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그 이후는 기 지원액의 절반만을 지급
 - 이중 금교수출가공구, 외교교보세구, 손교현대화 농업개발구에 등록된 상술기업은 시현한 부가가치액, 영업수익의 보조금 지원기간을 1년간 연장 신청할 수 있음
- 도시재개발프로젝트 참여시 이윤총액의 14% 보조
 - 효과에 비해 이윤회수가 저조한 프로젝트는 영업액의 5% 이내에서 보조금 지급
- 포동 소재 대형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신규 투자한 기업
 - 기업 부가가치액의 2%를 3년간 보조금으로 지급

□ 포동신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지원 사항이며, 투자기업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비공개로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음

-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의사가 있을 경우 태스크포스(小組)가 조직되고, 은행, 세관·관련정부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각종 혜택을 파격적으로 부여

※ 중국의 투자유치담당관 인센티브제도

(i) 사후관리서비스 현황

□ 사례 1 : 상해시 가정시 안형진(上海市 嘉定市 安亭鎮)

- 지역특색 : 중국 승용차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폭스바겐(Volkswagen)사 투자지역으로 상해 도심으로부터 서북쪽 1시간 거리에 위치
- 관련 규정 : 中共安亭鎮委員會, 安亭鎮人民政府의 공업원구개발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약간의견(安委2001 제2호)중 “투자유치장려정책”에 규정
- 적용대상 : 내국투자 또는 외국투자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토지, 공장임대 및 매매 프로젝트 유치에 성공한 모든 사람(소개인 등 포함)
- 인센티브 주요 내용 : 소개한 신규 프로젝트가 실제 이행되어 토지사용, 공장신축, 설비도입시 총 투자액의 0.6%~1%를 인센티브로 지급
 - 200만불 이하 : 1%
 - 201~500만불 : 0.8%
 - 501~1000만불 : 0.7%
 - 1000만불 이상 : 0.6%
- 공장, 창고, 설비 등의 임차연한 기준 : 3년 이상 임차시 1차년도에 도래한 임대료 액수의 8%, 임차기한이 2년인 경우 임대료의 6%를, 1년일 경우 4%씩 각각 지급
- 공장, 설비 등의 갱신수요 : 투자자금 도래 후, 동 액수의 1%

- 프로젝트의 소개가 여러 단계를 거칠 경우, 인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소개자가 받는 인센티브의 10% 지급

□ 사례 2 : 청도시 황도구(靑島市 黃島區)

- 지역특색 : 화공, 기계등 기술형 기업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산동성내 주요 한국기업 밀집 공업단지중 하나
- 관련규정 : 山東省靑島市人民政府의 “외작항목 초상 장려 정책”중 관련 규정
- 적용대상 : 외국투자 소개하여 토지 공장임대 및 매매 유치에 성공한 기관 및 개인
- 인센티브 주요내용 : 공무원 등 국가기관 종사자가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실제 외자 이용금액의 6%에다가 계약합동금액의 초과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 단 개인인 경우 아래와 같은 비율 적용

< 개인의 경우 >

- 10만불 이상 100만불 이하 : 인민폐 3만원(3,625불)
- 100만불이상 300만불 이하 : 인민폐 10만원(12,080불)
- 300만불이상 500만불 이하 : 인민폐 20만원(24,160불)
- 500만불이상 1,000만불 이하 : 인민폐 30만원(36,240불)
- 기술형, 수출액 많은 기업이면 실제 이용금액의 0.5%에서 3%까지 추가
- 세계 500대 기업을 유치하면 인민폐 20만원(약 24,160불) 더 추가
- 지불시기 : 등록 첫 자금 입금 후 50% 지불, 계약금액의 50% 입금 후 나머지 50% 지불

□ 사례 3 : 청도시 성양구(靑島市 成陽區)

- 지역특색 : 섬유, 기계등 기술형 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청도시 각 구중 한국기업이 제일 많은 공업단지
- 관련규정 : 靑島成陽區人民政府의 “외상투자 장려 의견”중 관련규정(靑成 39호)

- 적용대상 : 외국투자 소개하여 토지 공장임대 및 매매 유치에 성공한 기관 및 개인
- 인센티브 주요내용 : 공무원등 국가기관 종사자인 경우 총투자액 기준으로 실제 외자 이용금액의 6%에서 10%까지를 인센티브로 지급. 단 개인의 경우 아래 비율 적용

< 개인일 경우 >

- 100만불이상 200만불 이하 : 인민폐 8만원(9,665불)
- 200만불이상 500만불 이하 : 인민폐 15만원(18,123불)
- 500만불이상 1000만불 이하 : 인민폐 30만원(36,240불)
- 세계 500강 기업을 유치하면 인민폐 20만원(24,160불) 추가
- 지급시기 : 등록 첫 자금 입금 후 50%를 지불하고 계약 금액 50% 입금 후 50%를 지불함. 추후 원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되었을 경우 초과금액의 1% 추가하여 지급

□ 사례 4 : 광둥성 증성시(廣東省 增城市)

- 지역특색 : 광주시 동북쪽에 위치한 현급시로 지역편제상 광주광역시에 속하며 시 중심에서 약 40분 거리에 위치. 동 시는 농업 및 삼림지역이나 최근 의류, 피혁제품, 신발, 건축자재, 정밀화학, 기계산업 등 공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청바지 및 캐주얼 의류는 중국전체 생산의 60% 점유
- 관련규정 : 增城市招商引資獎勵辦法에 근거하여 지급
- 적용대상 : 증성시로 투자를 유치한 국내외기업, 사회단체, 유관기관, 기타조직 및 개인(직업이나 신분, 국적에 제한 없음)
- 인센티브 주요 내용 : 아래 투자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자에 총 투자 유입 금액의(증자부분은 제외) 0.03%(세금 공제후 금액)를 인센티브로 지급. 최고 한도액은 50만위엔(약 60,408불)
 - 생산성, 개발성, 경영성 프로젝트
 - 기타 시정부로부터 확인된 프로젝트

- 유치한 프로젝트가 하이테크 산업으로 廣州市 이상의 상위기관으로부터 승인되는 경우 당초 인센티브의 20%를 추가적으로 지급
- 증성시를 비롯한 鎮(街), 加工區, 村, 市 산하 경제단위에서 제공하는 별도 인센티브는 공히 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해석은 시정부가 권한을 가짐

3) 싱가포르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 투자유치정책

□ 투자유치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지역개발에서 산업구조고도화로 정착되면서 세계 초우량기업의 유치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기획유치 접근방식으로 다국적기업 투자자의 계획과 싱가포르의 중·장기적 경제발전목표간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고용창출과 내수진작에 활용하고 있음

- 인센티브 부여·세제감면 재심사시 고용증대, 자국소비진작효과 등을 중점 고려
- 공장·빌딩 건축시 하한규제가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소비 촉진 도모

□ 투자계약 성립 및 이익실현 시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활약상에 따라 사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함

- 다국적기업의 亞太지역 기업활동 거점지로서의 싱가포르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1986년부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제도 시행
- 운영총괄본부(OHQ, 1986) 자격제도를 필두로 사업총괄본부(BHQ, 1994), 제조업총괄본부(MHQ) 및 세계본부(GHQ)제도를 도입

(2) 투자유치기관

□ 기존산업의 성장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 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을 설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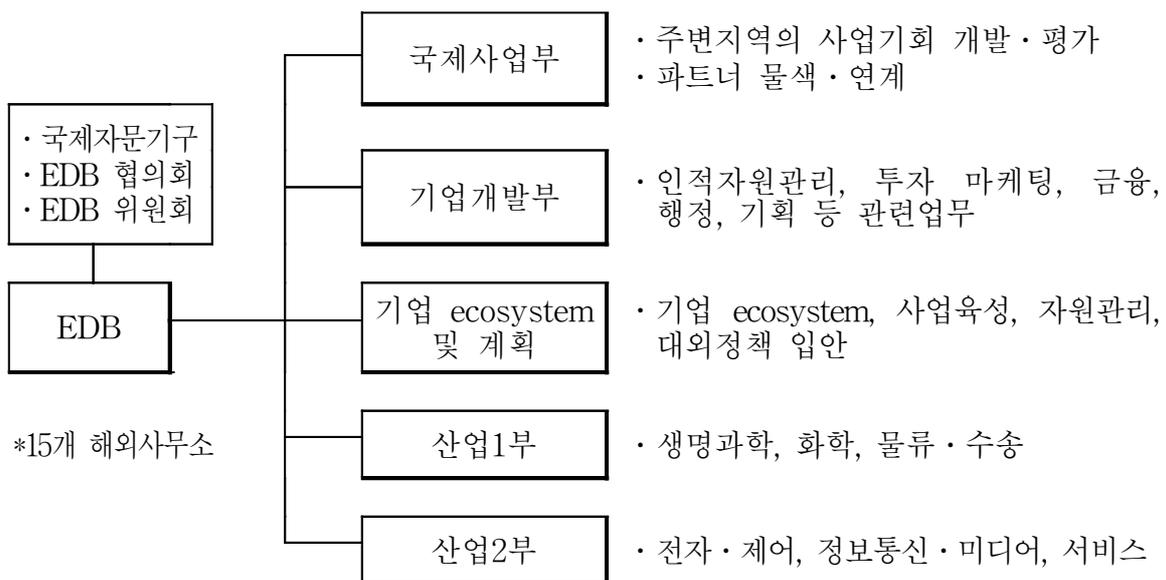
- 무역개발청(TDB), 주룽도시공사(JTC),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투자 관련 전 분야에서 원스톱서비스 제공
- 투자입법, 인프라 및 인력확보, 조세인센티브 제공
-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투자자에게 정보제공·산업용지·운영시설·금융·사업파트너 및 숙련인력 확보가 가능토록 후원

□ EDB에는 내부 자문기구(3개)와 사업부(5부)가 있으며, 309명(본부 257명, 해외 52명)이 본사 및 17개 지역(북미 6, 유럽 5, 아시아 6)에서 근무중임

- 조직은 최고경영자, 노조간부 및 정부책임자 등 12명으로 구성(임기 1년, 매년 선출)되어 EDB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EDB협의회가 있으며,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제자문기구, 집행기구인 EDB위원회 등이 있음

< 그림 II-1 >

EDB 관련 조직



(ii) 고용보조금 등 기타 현금보조

- 관련 규정 : “포동신구 재정지원과 경제발전에 관한 의견”(2000.10.31)
- 지원대상 : 3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현지인(포동 거주민)이 전체인력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규모

보조금 산정기준 (현지인 고용율, %)	보조금 비율 (%)		지원기간
	25 이상	50 이상	
부가가치액	2.0	2.5	3년
영업수익	5.0	3.0	
영업이윤	7.0	14.0	

(iii) 입지지원

- 원스톱서비스체제로 기업설립시 소요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 표방

(iv) R&D센터 유치를 위한 세금감면 등의 조세지원 현황

- 관련 규정 : “포동신구 재정지원과 경제발전에 관한 의견”(2000.10.31)
- 기업기술 개발기구가 기술판매, 기술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1년간 30만 인민폐 이하의 경우 관련 소득세를 면제
 - 선진기술(관련기관의 인증을 요함)을 외국에서 도입시 로열티 등 부분에 대해 영업세제, 관련 기업 소득세의 5% 감면
 - 위험보상금 지급 : 기업투자액 중 하이테크기술 영역의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70% 이상일 경우 당해년도 소득총액의 3%를 위험보상금으로 전년도 손실 보전금으로 충당토록 함

자문기구	내 용
협의회 (Members of the Board)	-다국적 기업 또는 국내기업 최고경영자, 노조간부, 관련부처 책임자 등 12명으로 구성 -EDB 전략방향 수립 및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국제자문기구 (International Advisory Council)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싱가포르 주재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주축으로 EDB 활동에 대한 자문
위원회 (EDB Committee)	-EDB의 구체적인 전략과 운영담당 -'Industry 21' 사업 추진

□ 유치활동은 투자적격지로서의 홍보와 더불어 산업별 특성 홍보에 주력함

- 산업별 유치정책의 특성에 맞게 일반매체를 비롯하여 산업관련 전문저널을 통해 홍보하는 등 국가이미지 구축사업
-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가 방문시 투자와 관련된 민간기업이나 정부부처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주거환경, 레저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air to air service” 시행

< 표 II-2 >

기타 투자유치 유관기관

기관명	담당업무
Jurong Town Corporation	산업용지 및 관련시설 개발
Ministry of Labor	노사관계 안정, 노동자의 안전, 보건
Ministry of Trade & Industry	전반적 경제계획, 분석 및 경제정책 조정
National Computer Board	정보기술계획, 국가정보화 총괄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Board	산업 및 서비스부문의 연구개발활동 증진
Port of Singapore Authority	효율적 항만시설 및 서비스 제공
Singapore Productivity & Standards Board	인력개발, 경제구조조정, 기술진보등을 통한 생산성 및 경쟁력 증진, 중소기업 개발기능
Trade Development Board	무역업 관련의 투자자 지원 및 정보제공

(3) 투자지원절차

□ 투자인센티브 운영절차 및 내부 심사기준을 비공개로 진행함

- 지원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EDB와 산하기관의 자체지침에 의해 시행되며, 중요 투자프로젝트는 EDB가 비공개로 지원폭을 결정
- 인센티브 신청요건 만족시 자동적으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자국내 경제적 기여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안별로 인센티브 제공
-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별로 자세한 수혜조건이 지정되어 있으나, 사안별로 처리하여 투자가와의 협상가능 요소를 폭넓게 두며, 경기침체시 소득세·법인세 등 세율을 유동적으로 미세조정

□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산업담당관이 판단한 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임

- EDB의 해당 산업담당관들이 작성한 기술적 우월성,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공헌도 등의 산업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 수혜여부, 수혜범위 및 기간 등 내용 결정

□ '이익실현' 시점과는 무관하게 EDB로부터 인센티브 제공이 결정되는 '사업개시' 시점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 감면

(4) 투자인센티브

□ 싱가포르는 조세감면에 금융지원(보조금 지급 및 융자지원)에 근거한 투자 인센티브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간접금융지원, 투자기업의 합작파트너로서 실질적인(소량의) 소유지분 투자 등 여러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함

□ 인센티브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개척자격(Pioneer Status) : 싱가포르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신기술 도입의 경우 제품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5 -10년간 법인세를

26% 감면함. 면세기간중 손실은 기간종료 후로 이월 가능하며 또한 개척자격 기간 종료 후 추가 개척자격(Post Pioneer)으로 인가받게 되면 최장 10년간 10%의 법인세율 적용

- 생산설비 확장(Expansion Incentive) : 기존 제조기업이 1천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생산설비 확장기업에게 확장부분의 소득에 대해 확장일로부터 최고 10년까지 법인세 감면
- 투자소득 공제(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 개척자격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이 승인된 산업분야(제조, R&D, 건설, 식수절약) 활동을 위한 자본설비에 5년의 법정기한내 투자를 시행할 때 신규 투자액의 50%까지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
- 사업본부 설치(Operational Headquarter) :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업으로서 싱가포르내에 본사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자회사를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이자·로열티·외환거래수입·역외투자수입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설립 후 최고 10년까지 본부 법인 또는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5~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외국 원천배당소득은 10년간 비과세이며 비과세소득으로 지불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 가속 감가상각 지원(Accelerated Depreciation Scheme) : 기계설비에 대한 통상적 감가상각율(초기 20%, 매년 5~20%) 대신, 컴퓨터 및 자동화설비·산업용 로봇 등에 대해 연 100% 또는 33.3%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주거나 산업용 건물에 대하여 25년간의 감가상각을 인정
- 해외 융자액에 대한 지원(Approved Foreign Loan Scheme) : 생산설비 구입을 위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2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융자를 받은 경우(단, 면세액이 해외에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를 감면
- 금융지원 : 금융지원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자진흥 담당기관인 경제개발청과 기타 유관기관들의 자체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다만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 투자는 경제개발청(EDB)이 개별 투자건마다 비공개로 지원폭을 결정

< 표 II-3 >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현황

명칭	요건	주요지원내용	지원규모
개척자격	싱가포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신기술 도입	과세폭 감면 세율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5-10년간 법인세 26% 감면 · 추가 개척자격기업으로 인가 받을시에는 최장 10년간 10%의 법인세율 적용
생산설비확장	1천만싱가포르달러(S\$) 이상의 생산설비 확장 기존 제조기업	법인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일로부터 10년간 법인세 감면
투자소득공제	개척자격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이 승인된 산업분야활동을 위한 투자 시행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투자액의 50%한도내
사업본부 설치	싱가포르내 본사업무를 담당하는 현지법인 설립, 해외자회사를 관리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법인 또는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5-10% 세율적용 · 원천배당소득 10년간 비과세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가속감가상각 지원	컴퓨터 및 자동화설비, 산업용로봇	감가상각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00% 또는 33.3%의 감가상각 인정 · 산업용 건물일 경우 25년간의 감가상각 인정
해외융자액에 대한 지원	생산설비 구입목적으로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20만싱가포르달러(S\$) 이상 융자 경우	이자소득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액에 대한 원천과세 감면
금융지원	신규인력 고용규모 및 지속적인 고용규모 유지 여부가 관건	무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건마다 미공개로 지원폭을 결정

4) 말레이시아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 투자유치정책

□ 말레이시아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는 산업구조 고도화라고 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정책도 이러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는 내외국인 투자를 막론하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음
- 노동자 1인당 투자되는 자본금 비율(C/E :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이 55,000 링기트 이하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산업으로 정의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제조업 허가나 투자인센티브 부여대상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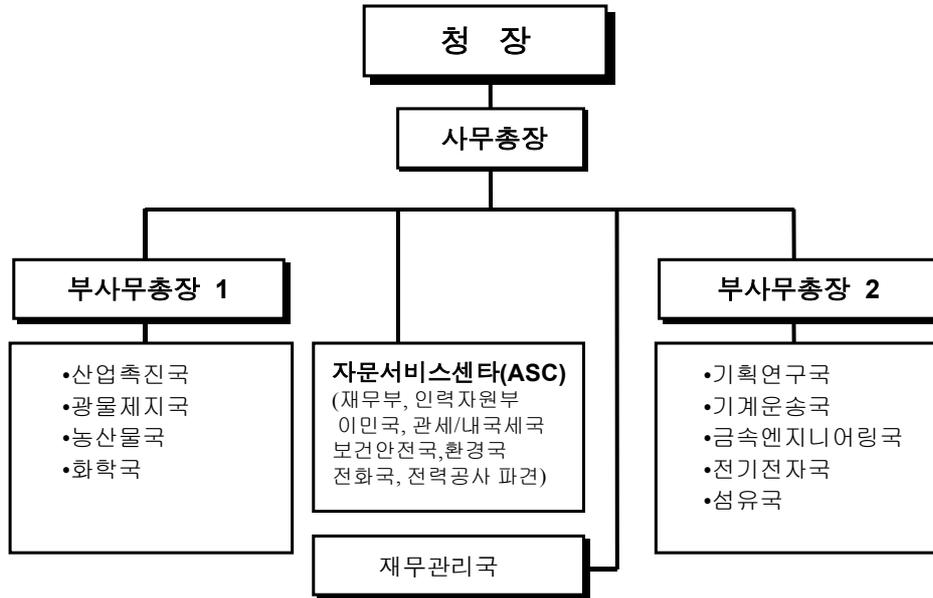
□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국기업과 차별적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음. 오히려 자국기업과 합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지분소유비율을 소유지분비중, 수출비중·투자프로젝트의 기술수준·파급효과·부가가치 및 원자재 국내조달 정도에 따라 제한하여 실질적인 자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음

- 수출비중이 총 매출액에서 80%이상 차지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소유한도가 100%로 단독투자가 가능함. 수출비중 51%~79%는 지분소유한도가 51%~79%, 수출비중이 20%~50%는 30%~51%, 20%미만일 경우에는 최고 30%만이 외국인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말레이시아정부는 현지의 경제난으로 둔화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1998. 7.31~2000. 12.31의 기간중 이루어지는 신규투자 신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상기 수출비중에 의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 규정을 유보하여 수출비중에 상관없이 외국인이 100% 지분소유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2) 투자유치기관

□ MIDA는 통상산업부(MITI) 산하의 외청으로, 국가산업육성을 위한 진흥 및 조정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되어 말레이시아 산업정책 및 제조업분야 투자유치정책의 입안 및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음

- 1988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CENTER OF INVESTMENT(COI)"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래 제조업 내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심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음
 - 산업화 과정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 보고
 - 산업진흥정책 및 공단개발정책 입안, 집행
 - 산업육성 또는 보호를 위한 각종 세제정책의 대정부 조언
 - 제조업 허가, 투자사의 세제인센티브 허가, 외국인 고용인수 허가, 기계류 및 원자재 수입관세·판매세 면제 허가 등
- 조직은 본청(10국, 투자상담센터, 총무관리부서) 및 국내 13개(각 지방자치주), 해외 15개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총 489명 중 본사 384명, 국내 35명, 해외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1998 6.30 현재). 예산은 1997년도에 1,250만 달러로 전액 국고지원을 받고 있음
- 청장(Chairman) 아래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이 있으며, 2인의 부(副)사무총장(Deputy Director General)이 있음. 부사무총장들은 총 8개의 산업국 중 4개씩을 각각 나눠서 관리하며, 또한 제1부 사무총장은 산업진흥국(Industrial Promotion)을, 제2부사무총장은 기획연구국(Planning & Research)을 관할함. 상담서비스 센터(Advisory Service Centre: ASC)와 총무·인사·회계를 관리하는 재무관리국(Administration, Finance & Central Services)은 청장소속으로 되어 있음
 - 산업촉진국은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계획을 수립·집행하는 부서로서 제조업 부문 투자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전문산업공단 개발, MIDA 해외사무소 관장,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하며 기획연구국은 산업전략연구, 투자인센티브연구, 국제협력계획 수립, 지방정부와의 협력, MIDA 국내사무소 관장, 제조업부문 통계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상담서비스센터는 MIDA 본청 1층에 설치된 투자상담센터로, 우리나라 KISC내 종합행정지원실의 행정지원팀과 유사함

- 상담서비스센터는 각 정부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과 MIDA소속 행정지원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업무는 투자와 관련된 제반절차 및 허가사항·서식배포·서식작성요령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며, 이러한 상담자문 역할외에 투자실행위원회에 상정할 개별안건을 취합하는 업무를 수행함. 재무부·인력자원부·이민국·관세 및 내국세국·보건안전국·환경국·전화국·전력공사 등에서 파견 나온 8명의 상담요원은 모두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음
- 이민국 파견자의 경우 임시비자 연장 등의 일부권한 등을 가지기도 하나, 주요 기능은 투자관련절차 및 관련법규에 대한 상담 및 안내이며, 현안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음. 또한 급여는 해당 소속부처에서 지급 받고 있음

□ 해외지사는 자율적으로 선정된 투자유치 목표기업에 대한 접촉 활동사항을 분기별로 본사에 보고하고 있으며, 신분은 거의 대사관 소속 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음

< 표 II-4 >

MIDA 해외사무소 현황 및 지위

국가	도시	직원수	직원신분	사무실
일본	동경	3	외교관	대사관 소속
	오사카	4	외교관	대사관 소속
한국	서울	6	일반	독립
호주	시드니	6	일반	독립
대만	타이페이	4	외교관	대사관 소속
프랑스	파리	4	외교관	독립
독일	켈른	5	외교관	독립
이탈리아	밀라노	4	외교관	영사관 소속
스웨덴	스톡홀름	5	외교관	대사관 소속
영국	런던	5	외교관	독립
	LA	5	외교관	영사관 소속
미국	시카고	5	일반	독립
	뉴욕	5	외교관	영사관 소속

□ MIDA는 통상산업부 소속이지만 타 정부기관과는 달리 독립성이 강한 조직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

- 타 부처와는 달리 직접 직원을 공채하며 타 부처와도 보직교류를 하지 않고, 이사장은 외부에서 영입하고 있으나 사무총장까지는 공채직원의 내부승진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이 보장되며 타 정부기관과의 마찰도 거의 없음

□ 각 주정부도 중앙정부 조직인 MIDA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지역내 외국인투자유치 조정 : 각 주정부에는 경제계획국(Economic Planning Unit)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있으며, 산하에 월스톱서비스센터를 두고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 관련절차 안내 및 지역내 공단안내, 공장건설에 따른 절차안내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공단조성 및 분양/운영 : 주정부는 산하의 州 경제개발공사(State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또는 민간업체에게 공단조성 및 분양 등의 업무를 위임하여 운영
- 공장건설에 따른 제반허가 : 공장건설 허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13개 관련 부서 및 기관(소방시설, 수도 및 용수, 환경, 전기·전력, 안전, 통신, 도로, 부동산, 하천관리 등) 전부의 검토 및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동 과정에 대한 조정 및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음

(3) 투자지원절차

- MIDA는 제조업허가와 투자인센티브허가만을 담당하며, 기타 서비스업에 대한 해선 해당 부처가 각기 담당함
 - 또한 회사설립 및 회사명 등록은 국내상업소비부에서, 공장설립 및 준공허가는 공장소재지 관할 각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MIDA내 ASC에서 절차·접촉기관·작성서식·공단현황·공장건설에 따른 제반법규 안내 등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MIDA에 제조업 투자 관련 상담 및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산업국은 제조업 육성차원에서 허가 및 인센티브 여부를 검토한 후 실행위원회(Action Committee on Industry : ACI)에 상정하며 ACI의 결정사항에 대해 통상산업부 장관의 결재를 득한 후 최종 결정사항을 투자자에게 통보함
 - 단, 국가전략산업 프로젝트 관련허가의 경우 통상산업부 장관이외에 재무부장관 결재도 득하여야 함
 -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인센티브는 10년간 면세 또는 5년 이내 발생하는 자본비용의 100% 투자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 폭이 커서, 정부의 조세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임
- 실행위원회는 산업국의 해당산업분야 담당자가 작성한 자료(ASC가 취합)를 토대로 제조업허가 및 인센티브 수혜를 심사하는 위원회로, 다음과 같은 기능 및 특징을 갖고 있음

- 구성 : 위원장은 MIDA 청장(chairman) 또는 MIDA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이 되며, MIDA에서는 부사무총장 2인(deputy director general I, deputy director general II) 및 모든 국장(director)들이 참석하고, 정부부처에서는 통상산업부(MITI) 및 재무부(MOF)·내국세국·관세국의 국장급이 참석함. 또한 사안별로 필요시 이민국·환경국·중소기업개발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석함
- 개최시기 :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
- 기능 :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제조업 허가여부, 제공가능 인센티브 종류, 외국인 기술자수 등에 대해 결정
- 위원회의 인센티브 수혜근거 : 동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인센티브의 내용 및 종류는 이미 공포 되어 있는 투자진흥법(Promotion of Investment Act)
- 인센티브 결정시 고려사항 : 산업별, 제품별로 책정되어 있는 3가지 수준 ① 부가가치기준 ②원자재 및 부품 국내조달비율 ③기술수준(MTS지수 = 전체 직원 중 관리기술감독직 직원의 비율) 중 최소 2개 이상 충족되어야 함
- 처리기간 : 첨단기술 수반산업에 대한 신청건은 신청 후 4주 이내에, 기타 신청 건은 6주 이내에 일반적으로 처리함

(4) 투자인센티브

- 투자인센티브는 보조금형식이 아닌 세금감면형태로 주어지며, 크게 신규투자 및 재투자, 그리고 사안별 기타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음.
 - 신규 및 재투자에 관한 인센티브는 투자진흥법을 근거로 하며, 기타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개별 특별법에 기초하고 있음
- 신규투자의 경우 인센티브 수여가 합당하다고 결정된 신규투자자에게 개척자격(Pioneer Status)과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라는 두 가지 인센티브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짐. 따라서 투자자는 어느 인센티브가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분석하여 결정함
 - 개척자격 : 개척자격을 취득한 회사에는 소득세가 부분적으로 면제되어 법정 소득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 혜택 부여기간은 통상산업부가 지정

한 생산일로부터 5년간이며 개척자격 대상업종은 투자권장제품으로 별도 고시하고 있음. 단, 동(東)말레이시아(사바, 사라왁) 및 말레이반도 동부지역 등 우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회사에 대해서는 동 기간 중 법정소득의 15%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

- 투자세액공제 :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해 60%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계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총공제액이 소진될 때까지 다음해로 계속 이월 가능함.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은 투자권장제품으로 별도 고시하는데, 동(東)말레이시아 및 말레이반도 동부지역은 역시 우대지역으로 자본지출에 대해 80%의 공제 혜택을 받으며,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85%까지 상계가 가능함

□ 재투자공제(Reinvestment Allowance)는 생산시설 확장 및 생산설비 현대화, 관련제품의 다변화를 위해 실시한 자본지출에 대해 60%까지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공제액은 과세년도 법정소득의 70%까지 상계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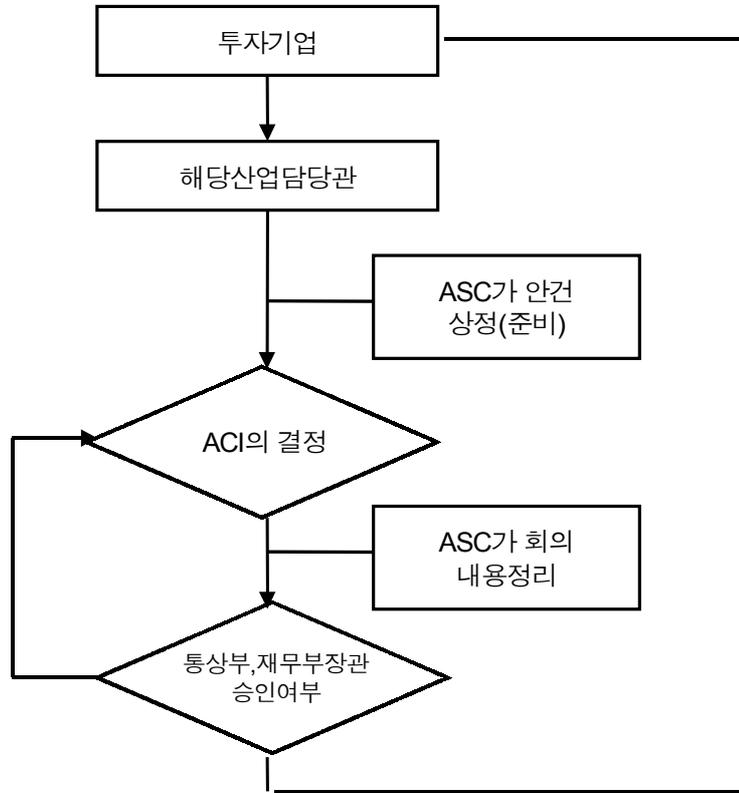
- 산업구조조정투자공제는 목재·섬유·기계·엔지니어링 분야에 1990년 이전기 투자회사가 생산성향상 등 구조조정을 위해 실시한 일정 범위내 자본지출에 대해 최고 100%까지 공제 혜택을 부여함
- 산업구조조정공제는 통상산업부 및 재무부장관의 사전승인 필요하며, 투자세 공제 및 재투자공제 등과의 이중혜택은 금지되고 있음

□ 기타 인센티브에는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 첨단기술산업 투자장려책, 산업재산권 취득을 위한 장려책, 중소기업 투자장려책, 산업자생력 강화를 위한 투자장려책,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유치를 위한 장려책, 수출장려책 등이 있음

-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과 첨단기술산업 투자장려책이 가장 큰 인센티브인데, 국가전략프로젝트 투자장려책은 대규모 첨단기술 프로젝트로 국가전략상 필요한 경우 부여하는 인센티브로 10년간 세금 면제 또는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한 100% 투자세 공제혜택을 부여함
- 첨단기술산업 투자장려책의 경우에는 신기술 개발사업에 종사중인 회사로 지정된 첨단기술회사에 대해 5년간 세금 전액 면제 또는 최초 투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자본지출에 대해 60%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림 II-3 >

말레이시아 투자인센티브 결정절차



5) 한국의 투자정책 및 유치제도

(1) 투자유치정책

□ 투자인센티브제도의 변천과정과 국내외 정책환경, 투자제한업종 개방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정책의 특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음

< 1단계 > 외자관리정책기(1961~1983) : 1960~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1984년 7월 이전)의 우리나라 투자정책단계는 “외자관리정책기”라 할 수 있음

□ 1960년대 초에는 상업차관 및 IBRD 등의 공공차관 도입에 역점을 두는 상업차관 중심의 외자도입을 추진하다가 1965년 이후 격증한 상업차관 도입에 따른 대외채무부담에 직면하자 국내산업과 과도한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게 되었음

- 외화 가득을 목적으로 수출촉진전략에 따른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를 활용하였으며,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 인가하되 합작투자 원칙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외국인단독투자를 허용하였음

□ 1970년대에는 생산설비, 중간재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중화학공업 부문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으나, 여전히 외국인의 경영참여에 제한을 가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은 내외국인간 50 : 50을 원칙으로 하였음

- 이러한 국내 산업정책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1970년대 말에 불어닥친 제2차 석유파동 및 개도국의 채무불이행선언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차관중심의 외자도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됨

< 2단계 > 초기산업정책기(1984~1997) : 2단계인 1984년 7월부터 외환위기 발발 1년 후인 1998년 11월까지의 “초기산업정책기”라 할 수 있음

□ 허용업종을 열거방식에서 금지·제한업종 열거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제한업종에 대해 일률적인 50%의 투자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업종별로 상이한 투자비율을 설정하여 개방화를 가속함

□ 1980년대 후반은 국내외 경제호황으로 인해 외환사정이 호전되자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해 오히려 폐쇄적 태도를 보인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이 기간 중 투자정책의 기초는 투자대상은 개방하되 이전처럼 외국인투자기업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수혜 대상업종을 제한(7개 업종)하여 국가경제정책 차원에서 특정 산업, 특정 효과를 이루기 위한 분야에만 인센티브를 한정하는 것으로 산업정책적 요소가 외국인투자정책에 가미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7개 조세감면대상 업종은 다시 고도기술수반사업,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에만 국한되며, 산업정책적 요소가 점차 비중있게 다루어졌음. 1980년대 말에 제조업에 대해 투자개방을 하였으며 1990년대 초에는 서비스업을 개방하였음

〈 3단계 〉 **복합경제정책기(1998~현재)** :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된 1998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복합경제정책기”라고 할 수 있음

□ 외환위기로 인해 외환보유가 고갈되자 정부는 외환안정을 위해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를 확대하였음. 정부는 외환고갈·기업부실·실업증가 등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는 삼중고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정책목표의 초점이 맞춰졌음

- 정부는 투자인센티브 수혜기간을 확대하고, 장·단기 국채 및 채권시장 및 국경간 인수합병(M&A)시장을 개방하여 공장설립형 투자보다는 인수합병형 투자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투자개방업종도 대폭 확대하였음

- 총 1,148개 업종 중 보통 농작물생산업·근해 및 연안어업·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업·내항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 미개방 7개 업종과 발전업·유선 방송업·뉴스제공업·유무선전신전화업 등 14개 부분개방업종 등 총 21개 업종만이 제한업종으로 99.4%의 개방화율을 보이고 있음

※ 산업정책과 관련한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정책의 특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산업정책수단으로서 외국인투자정책이 급작스러운 외환위기 도래로 인하여 “초기산업정책기”에서 이후 단계인 “산업정책 정착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다른 복합적인 경제정책수단으로 섞여 활용되었다는 점임

< 표 II-5 >

연대별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구 분	정책목표	주요 내용	관련 법률
1962~72	투자재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개발에 필요한 상업 차관중심 외자도입 · 수출촉진전략에 따른 수출 산업, 수입대체산업 육성에 활용 · 수출자유지역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 (1962) · 외자도입법 (1966)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970)
1973~79	외자도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현물 출자 · 외자도입선 다변화 · 도입외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차관도입 및 관리에관한법률 (1973) · 외국인투자 심사위원회 설치 (1974) · 외자도입인가 및 외화대출 방침 (1978)
1980~89	외국인투자유치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석유파동, 개도국 채무불이행 선언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차관방식 외자도입한계 · 개방업종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 50%투자비율에서 업종별 상이한 비율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 (1984, 86, 87) · 외화증권발행규정 (1985) · 상장법인 해외증권발행 및 관리에 관한규정 (1985) · 상업차관도입인가방침 (1986) · 공공차관 자금 효율화 방안 (1986)
1990~97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활성화정책추진(신고제전환) · 외국인투자 자유화 정책 (기존주식취득방식외국인투자허용,우호적M&A, 해외모기업으로부터 대부 받은 5년이상 장기차관 도입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도입법 개정 (1991, 95) · 외국인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법률 (1997)
1998~현재	경제위기 극복, 경제구조 개선·개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확대 : 국제감면 대상에 산업지원서비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 포함, 지방세감면에 등록세 추가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발족 · M&A투자방식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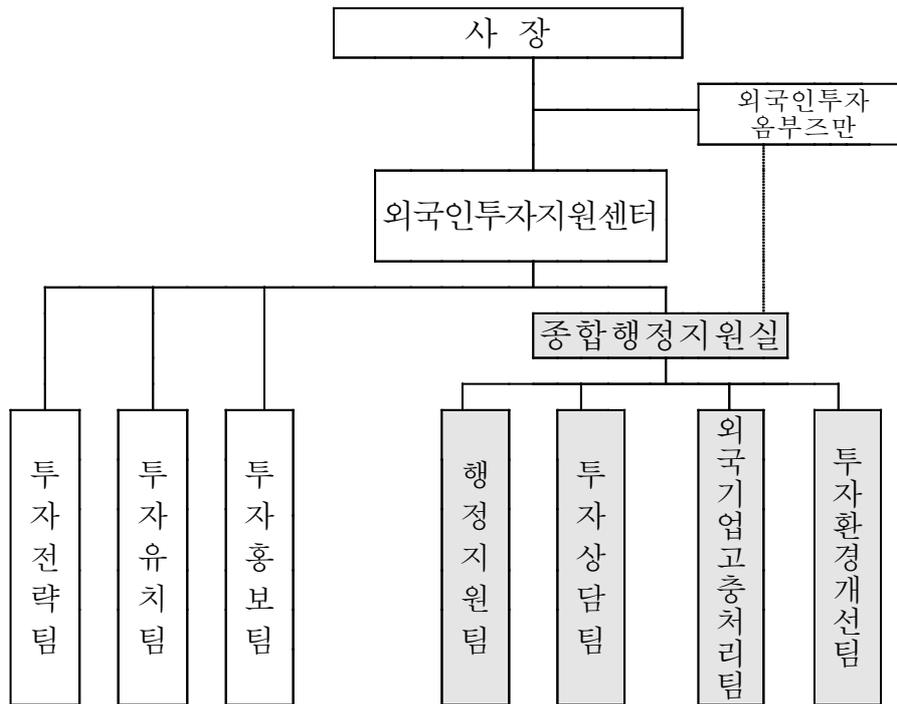
(2) 투자유치기관

- 외환위기 이후 외환가득을 제고, 산업구조고도화, 기업구조조정 등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확대가 필요한 우리나라 정부는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산하의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 「투자진흥본부」를 합쳐 KOTRA내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 KISC)로 기구를 일원화 하였음
 - KOTRA는 1962년에 설립하여 그 동안 무역촉진활동을 수행하다가 1994년부터는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회사명을 변경. 1994년 당시의 투자진흥업무는 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직접투자(out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였으며, 1998년 4월에 개소된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투자(inbound foreign direct investment)지원이 주요 업무
- KISC는 투자전략팀·투자유치팀·투자홍보팀외에 종합행정지원실을 두고 종합행정실에 행정지원팀·투자상담팀·외국기업고충처리팀·투자환경개선팀을 두고 있음(해외투자진출팀은 2003. 1 이후 시장개척팀에 통합·폐지)
 - 구성인원은 KOTRA직원 47명과 민간전문 계약직 21명,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 16명, 그리고 산업단지공단,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10명 등 총 94명이 근무중(2002년 12월말 현재)
- 해외 조직은 KOTRA 무역관 중 미국·일본·구주 등 36개 무역관을 투자유치거점 무역관으로 지정하고, 개별 무역관에 30명의 투자유치전담관을 임명하여 투자관련업무만을 담당하게 함
 - 투자전략팀은 투자정책관련 자료작성, KISC 중장기계획 작성, SOC프로젝트 상품화 사업 등 정부정책 및 KISC 전략수립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투자유치팀은 인콰이어리 처리, 사절단 파견, 투자성과집계 등 직접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투자홍보팀은 각종 투자활동에 필요한 투자홍보물을 제작함
 - 종합행정지원실내 행정지원팀은 KISC와 정부부처간 연락창구 역할과 함께 법인설립대행·외국인투자가 비자발급 등의 민원처리와 국세·관세·노동·공장입지·환경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상담팀은

주요 투자가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업무를 수행함.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국에 이미 진출한 외국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환경개선팀은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 조사 및 대정부정책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함

< 그림 II-4 >

KISC의 조직구조



(3) 투자지원절차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체계에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
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이며, 그 산하에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설치
-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중앙부처 관련 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위원으로 참가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조세감면 및 보
조금지급 규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제반 인센티브 결정권을
보유함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관계부처 소속 1급 공무원, 시·도부지사급의 위원들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정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 KISC는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유관기관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투자신고에서 사후관리서비스까지 투자가를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KISC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투자 타당성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외국인투자제도 및 절차·법률·조세·회계 등의 전문가 자문 등 정보 및 컨설팅서비스의 무료지원 등이며, 또한 외국인투자신고 접수 및 인허가업무 대행, 공장설립 및 법인설립시 각종 민원업무 대행 등임
- KISC는 홍보활동부터 직접적 투자유치활동,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사후관리지원까지 투자유치활동상의 전체 프로세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투자유치촉진서비스 전담기구라 할 수 있음
 - 지자체는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KISC와 연계하여 투자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투자진흥관과 투자유치부서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 유관기관간 매개적인 역할을 수행
- KISC는 투자환경을 소개 영문잡지인 “Korea Trade & Investment”와 산업정보·M&A 시장정보·지자체의 투자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각종 홍보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Cyber KISC를 통해 각종의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잠재투자가가 36개 해외 주재 투자거점무역관을 통해 투자인콰이어리를 접수하면 본사의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무역관을 통해 잠재투자가에 전달
 - 세무·금융·회계·노동·법률·입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행정지원실의 상담역은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기존투자가의 증액투자에 관한 문의사항 등을 처리

(4) 투자인센티브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인센티브는 조세감면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 감면외에도 국공유재산의 임대와 매각지원·보조금 등이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혜폭이 가장 큰 것은 조세감면제도임

□ 조세감면대상은 산업지원서비스업(111개), 고도기술수반사업(467개),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임

- 산업지원서비스업이란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고도기술수반사업이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한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조세감면방법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소득발생년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함

□ 지방세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사업개시일부터(단,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일) 5년 이내는 100%, 이후 3년간은 50% 감면 또는 공제
- 지자체 조례로 감면 또는 공제기간을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내에서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을 적용

< 표 II-6 >

조세감면제도의 변화

구 분	종전(1998.11 이전)	현행(1998.11 이후)
국 세 (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수반사업 : 8년간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자유무역지역 : 5년간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사업, 자유무역지역 등 - 구분없이 10년간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년간(등록세는 제외)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8년간(등록세 포함)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지자체별로 확대 가능

□ 사전확인제도의 도입

-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조세감면대상인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계획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

□ 관세, 특소세, 부가가치세의 면제

-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배당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가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될 경우 100% 면제

□ 국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지원

-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매각대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임대료의 감면, 분양가 인하 등의 혜택부여
- 임대기간은 50년 이내이나 갱신시 50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20년 이내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1년 이내에서 연기
-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는 조례로 납부기한과 분할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음

- 임대료 감면은 국가산업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내의 토지에 한함.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전용단에 입주한 100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은 100%, 외국인기업전용단에 입주한 500만불 이상의 제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 조정 및 지자체의 재정자립에 기여한 사업은 75%, 국가산업단에 입주한 100만불 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 500만불 이상의 일반제조업 등은 50%를 감면
- 지자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현재의 지자체 재정사정으로 볼 때 그 실효성은 작은 편임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함
 - 제조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로서, 그 금액이 5,000만불 이상이거나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기 개발된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3,000만불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임

※ 아일랜드의 투자유치진흥기관 IDA

-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상기 국가 외에 가장 모범적인 국가 및 투자진흥기관은 아일랜드의 아일랜드 개발청(IDA :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Ireland)일 것임
- 따라서 다른 장과는 달리 본장에서는 영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외에 아일랜드를 추가하여 IDA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i) IDA의 연혁

- 1950년대 말 정부는 수입대체정책을 수출진흥을 포함한 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은 EEC 회원국 평균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아일랜드의 주요 산업인 농업부문의 성장이 침체되자 농업에서 제조업분야로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1970년에 산업정책을 담당할 새로운 아일랜드 개발청(IDA :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Ireland)을 창설
 - 초기에는 외국인 투자대상지로서 아일랜드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1970년대까지는 국내투자 유도·제조업 구조조정·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
- 1980년대말 기업구조조정에 외국인투자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비로소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강화하기 시작. 1994년 외국인투자유치를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국내투자 부문을 분리하여 이부분을 새로 설립된 아일랜드공사(Enterprise Ireland)에 전담토록 함
 - IDA는 현재 투자유치활동, 인센티브 제공여부에 대한 결정, 토지 및 건물의 제공,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제언을 수행

(ii) IDA의 기능

- IDA는 전자·금융서비스·제약·화학·의료기기 관련산업 부문을 투자유치 집중기업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IDA는 외국인투자촉진, 인센티브의 교섭 및 인센티브 제공여부에 대한 결정, 산업단지의 개발과 운영, 그리고 투자가들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을 수행
 - 다른 정부기관과 비교해 볼 때 융통성(Flexibility), 자원(Resources), 결정권(Decision-Making Powers) 측면에서 우월적 권한을 보유
 - IDA는 투자유치 전략 및 목표수립, 유치전략의 실행, 목표 대비 성과에 관한 모니터링, 잠재투자가 분석, 투자인센티브 승인, 효율적인 업무절차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

- IDA 투자유치활동의 특징은 투자유치과정에서부터 투자가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며 투자유치활동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임
 - 기 진출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투자기업과 계속 접촉하며, 당해 모기업이 동종 또는 이종업종에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 IDA는 1994년부터 신규투자자와 증액투자를 각각 분리하여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 증액투자비율이 전체 투자유치액의 6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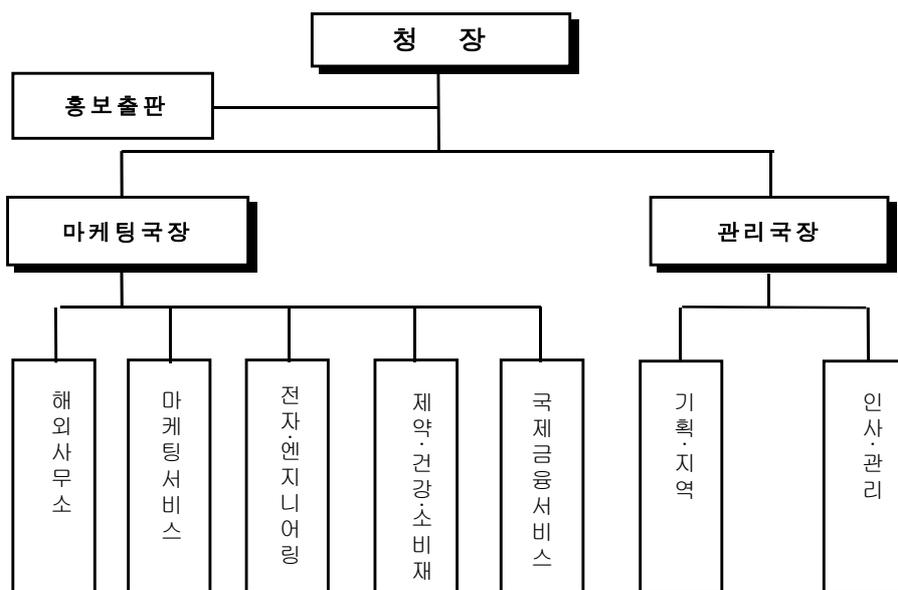
(iii) IDA의 조직 및 운영

- IDA는 이사회(이사장 등 3명은 공무원, 9명의 민간분야 출신), 국내 업종별 담당 부서(Sectoral Division)와 해외사무소(70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직원수는 280명임
 - 업종별 부서는 신규유망분야와 기존업종으로 구분되며 인원 비율은 4 : 6으로 구성
 - IDA는 시장분석, 투자수요 예측 등을 위한 8명의 연구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담당관은 해당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지식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분야를 교체하거나 해외로 보직을 변경
- IDA의 재원은 경상예산·자본예산·운영예산 등으로 구성됨
 - 경상예산은 임금·사업활동비 등 촉진활동에 제공되는 예산인데 이중 촉진활동비가 50%가 넘게 구성되어 있음
 - 자본예산은 투자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투자장소 및 건물에 제공되는 비용이 포함된 예산으로, 연간 약 1억5천만불에서 2억불 정도에 이르며, 기타 예산은 인력채용 정도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위해 제공되는 예산임
- 인력충원과 급여수준은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되나 채용·해고·고용조건 결정은 IDA에 일임되어 있음
 - IDA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며, 직원들에게 경쟁적 보상을 시도

- 본부는 수도 더블린에 있으며, 현재 자국내 8개의 지역사무소와 해외 15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음
 - 해외사무소의 역할 및 주재지역은 본사의 계획과 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바뀌지만 지역사무소는 거의 변화가 없는 편
 - 본부는 부문별 촉진전략·연간 계획·투자유치목표의 조정을 담당하며, 해외 사무소는 새로운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본부의 요청에 따라 잠재투자가를 관리
 - 아일랜드내 지역사무소는 본사 프로젝트 담당자와 협력하여 투자가의 주재 지역에 공장설립 등 투자실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 수행
- 본부의 조직구조는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대상산업을 고려하여 전자, 엔지니어링 등 산업별 부서를 두고 있음
 - 각 산업별 조직의 유치업무는 1994년부터 신규투자와 기존투자의 확대투자(증액투자) 유치업무로 각각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프로젝트담당자(Project Officer)를 두어 해외사무소와 연계된 원스톱서비스를 총괄하게 함
 - 마케팅서비스부서는 홍보와 출판을 담당하며 그밖에 해외사무소를 관리하는 부서, 기획, 국내사무소, 인사, 건물관리 및 운영관련 담당 부서 등으로 구성

< 그림 II-5 >

IDA의 조직구조



-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있는 통계자료원인 World Investment Report 2002년판 (UNCTAD 발행)을 보면 2001년도 전세계 해외직접투자(Outflows FDI)는 6,207억불로 외국인투자(Inflows FDI)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됨
-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기업의 투자행위이므로 Outflows FDI와 Inflows의 통계치가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① 통계수집상 오차와 누락 ② 각국마다 상이한 Inflows FDI에 대한 정의 등 때문임
- OECD 및 IMF는 외국인투자를 외국인투자가가 지분을 10%이상 확보하면 경영권에 참여할 의사가 있거나 이와 동일한 영향력을 자회사에 행사한다고 보고 외국인투자의 통계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는 각국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 또한 각국은 신고기준, 도착기준, BOP기준 등 다양한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어 각국간 비교시 기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
 - ① 신고기준은 투자를 할 금액을 보고한 경우이며 ② 도착기준은 실제 투자가 주재국으로 유입된 경우임 ③ BOP기준은 도착기준에서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금액에서 철수하여 금액이 빠져나간 부분을 차감하여 계산함(UNCTAD, IMF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주로 해당)
- 또한 국가간에 회기연도, 화폐단위 등이 상이하므로 비교시 동일한 기준으로 치환하여 비교하여야 함에 유의
- 투자통계데이터는 주재국 통산부 또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자료 외에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자료로서 UNCTAD, World Bank, IMF 등의 보고서가 있으며 기타 컨설팅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가 있음. 특히 외국인투자 전망에 대한 자료는 EIU, IFF 등에서 발간하며 M&A 통계자료는 KPMG, Thomson 등과 같은 기관에서 발행

2. 투자유치제도 특징 및 시사점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정책에 관한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투자정책 목표는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정치적 배경과 관련이 높다는 것임
- 영국의 경우에는 사양산업으로 인한 실업구제를 위하여 투자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고용창출과 낙후된 지역경제개발에 두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고용창출 정도와 진출지역의 낙후성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투자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개도국 등 다른 투자유치경쟁국에 비해 생산요소비용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영국은 보조금지급을 강력하게, 그리고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입지로서 매력도를 증대
 - 각 지자체는 자체 판단하에 반드시 유치가 필요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규정 한도내에서 또는 일반 법규정에서 허용하는 금액 이상일지라도 제공자와 수혜자간 협상에 의해 신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규모는 총 투자예산의 50%를 넘는 등 파격적 금융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 등 자체 매력요인을 통해 외국인투자촉진보다는 규제완화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 그러나 현재는 규제보다는 수출증대형 투자유치, 선진기술습득형 투자유치, 지역개발형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 단순 산업화과정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적으로 활용한 과거의 탈규제형 투자유치정책과는 달리 WTO가입 등 국제화의 가속,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구조고도화, 인프라발전 등과 연계한 인센티브형 투자유치제도를 시행
-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투자입지 측면에서 저임금 및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국내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 및 수출증대를 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투자여건은 영국과는 달리 1인당 고용창출 인원과 연계한 신축적인 보조금지급방식 대신에 명확한 기준에 의한 자본집약적 산업, 기술 집약적 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인센티브제도를 정착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음

□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미국 등과 같은 최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이른바 “싱가포르 21”을 추진하면서 기업·금융·관광·교통·첨단산업·비즈니스 등에서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외국인투자정책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지원
- 인센티브는 세제감면위주인 조세인센티브가 주류이며, 특히 발달된 금융지원 체제를 구비하고 있음. 조세감면 등 성문화된 법적 제약에 의한 신축적 운용의 한계를 EDB 주관하에 자금융자 등 금융지원의 탄력적 운용으로 극복

< 표 II-8 > 주요국 투자유치 배경, 정책목표, 정책수단 비교

	영국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투자유치배경	전통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실업문제의 정치적·사회적 쟁점화	국내 부족 산업자본에 대한 해외유치, 서부대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산업의 노동 집약화에 따른 경쟁력약화 및 인종간 소득 격차, “비전 2020”	협소한 국토와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의 국제화, 고도화필요 “싱가포르 21”	경제구조개선을 통한 경제 발전 필요(산업·기업구조 개선, 외환 위기 극복)
투자정책목표	· 고용창출 · 낙후지역균등 개발	· SOC시설, 하이테크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 수출확대	· 산업구조의 고도화 · 수출확대	· 세계화 중심 · 산업구조고도화 · 첨단산업육성	· 산업구조의 고도화 · 경제구조개선
투자정책수단	· 보조금위주 신축적 운용 · 보조금 산정기준을 1인당 고용 창출 인원과 연계	· 조세감면 위주 · 경제특구개발 위주 · 수출과 선진 기술을 연계한 조세 감면	· 명확한 기준의 조세감면 위주 · 조세 감면율을 1인당 투자자본 비율과 연계	· 세제감면위주 · 금융지원발달 (신축적 운용) · 조세감면율을 기술수준과 연계	· 조세감면위주 · 산업지원 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인센티브대상 제한

3. 한국의 투자유치제도 발전방향

- 앞서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국 투자유치정책은 각국의 경제현안을 고려하여 투자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투자유치수단을 마련하는데 있음
 - 이른바 일석오조라고 불리는 지역개발·외환유입·선진기술 습득·수출증대, 고용창출 등은 모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이유가 되며, 이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국은 조세제도 및 보조금제도 등 유치수단을 설계하고 있음
 - 즉 외국인투자정책은 경제정책의 하부시스템이며 각국의 경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외국인투자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환경이 변화하거나 목표가 달성되면 새로운 외국인투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성공적인 모범국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초기 외국인투자정책의 최대목표가 고용창출에 있었으나 실업률이 안정되자 목표를 산업구조고도화와 지역개발로 선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확충 및 유치활동을 집중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목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환보유고 증대의 양적개념에서 산업구조고도화 및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정책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확충하여야 할 것임

- 위와 같은 인센티브수단과 아울러 투자유치기관을 주축으로 한 투자유치활동도 투자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주요 수단이 됨. 각국의 투자유치체계는 일률적인 틀 없이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으나 투자유치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명확한 목표설정과 업무분장 : 각국은 명확한 투자정책, 투자유치목표 아래 분야별로 정부 및 각 기관이 투자지원 프로세스를 분담하여 중복 없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 소속 유치기관(Invest UK와 MIDA)

홍보·정보제공 및 자문활동 등 주로 촉진활동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 유치기관 들은 중앙정부의 투자지원 인프라를 적절히 이용하면서도 기능면에서 중복을 피하고 있음

- 기관의 독립성 부여 : Invest UK나 MIDA 모두 중앙정부에 소속한 조직임. 그러나 투자기관의 전문성 및 투자유치의 정책적 중요성이 반영되어 공히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초월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각 기관의 독립성은 지원업무 수행의 신속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각국은 투자유치 조직 및 기관에 대한 독립적, 우월적 입지를 더욱 보장하고 있는 추세임
- 국가차원의 총체적 협력 :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모두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전체 차원에서 상호협력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MIDA와 재무부간에는 인센티브 수여권과 재원에 대해 원활한 협조관계를 이루고 투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 적극적 홍보활동 및 예산지원 : 투자유치는 일종의 마케팅활동으로 적극적인 촉진활동이 필요하며 홍보안내책자 배포·사절단 파견지원 등과 함께 담당자의 업체 접촉이 강화되어야 함. Invest UK와 MIDA 등은 현지인력을 고용하여 연간 현지기업 접촉회수를 할당하고 연초 및 월초마다 접촉대상업체 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접촉케 하고 있음. 이와 아울러 외국인투자사절단을 본국으로 초대할 때에는 참가업체에의 항공료 및 숙박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

□ 투자유치업무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 및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함

- 단계별 투자유치 목표설정 : 현재 국내 외환위기에 따른 투자유치의 정책방향이 불명확한 상태로 투자정책 수립기관이나 실행기관,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간 또는 심지어 기관내부에도 중복된 기능과 조직이 존재하고 있음. 이는 장기 투자유치목표, 중단기 투자유치목표의 불명확성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로 목표설정의 명확화와 단계별 투자유치 세부목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산업구조의 고도화·실업구제·외환위기 극복 등 여러 목표간에는 서로 상충되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 목표간 우선순위 조정 및 가중치 부여가 요청됨. 명확한 단계별 투자유치목표 설정은 하부 유치기관의 지원방향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투자유치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할 수 있을 것임

- 프로세스별 업무분장에 따른 효율성 제고 : 투자정책수립과 정책집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과 능력에 따라 투자유치지원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중복 부분은 제거하여야 함. 투자정책수립은 중앙정부가, 홍보 및 촉진활동·투자정보 등 투자인프라구축은 KOTRA, 공장설립 등 투자물의 가시화과정상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투자유치기관간 협력정신 제고 : 위의 프로세스별 업무분장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투자유치기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각 투자유치 주체들은 우리 나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외국인투자유치가 최대의 공동과제인 점을 인식하여 새로 정비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 시행령에서 담은 제도개선사항들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간 협력정신 제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투자자 입장에서 서비스지원 : 모든 지원체제가 고객인 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됨에 불구하고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 지원시스템 및 담당자의 사고가 지원자 편의 중심적인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조직정비와 함께 적극적인 마케팅 사고 강화노력이 필요함. 각 기관의 투자자 지원구조는 지역별편제보다 전문성 및 투자자입장에서 편의성이 높은 산업별편제가 더욱 효과적일 것임
- 투자유치 담당자의 역량강화 : 투자유치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담당자 능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담당자들의 전향적인 프로의식 함양과 전문지식 배양 등 담당자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함. 그런데 우리 나라는 투자유치의 경험이 오래지 않아 투자유치 전문요원의 양적, 질적 육성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따라서 투자유치관련 전문요원 육성프로그램을 국가차원 및 관계기관차원에서 검토해야 함

Ⅲ. 산업입지제도

1. 각국의 산업입지제도 현황

1) 영국의 산업입지제도

(1) 개요

□ 영국의 토지개발은 「도시및농촌계획법」에 의해 토지개발 및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음

- 개발계획이 특정지역이나 토지의 용도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으며, 개발계획상 공업지역이 아닐지라도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높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특정지역을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허가신청 할 수 있음

□ 영국은 허가권자(지방정부)의 재량에 의해 언제든지 계획의 허가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성 국무장관이 제시한 계획정책지침의 틀내에서만 재량권이 주어짐

(2) 토지이용

□ 산업단지의 분양방식으로는 분양과 임대의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되고 대부분은 임대방식이며,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장기임차 :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동안 토지이용에 관해 폭 넓은 재량권을 부여
- 표준임차 : 계약기간은 보통 25년이며, 이용규정(Covenants)의 부과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건물이용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제
- 단기임차 : 기간은 보통 6, 9, 12, 24년 등이 적용되며, 3년 또는 5년 범위에서 재 평가

(3) 투자특별구역 운영현황

- 영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실업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개발지역(Development Area), 준개발지역(Intermediate Area)으로 지정하여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내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동 개발지역은 한국의 산업단지처럼 일정 부지 위에 제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아니라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광범위한 지역 내에 투자업체들이 임의로 입주해 있는 분산형태를 띄고 있음
 - 따라서 동일한 개발지역이라 할지라도 지가의 수준이나 입주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상이함

(4) 기업장려지구(Enterprises Zones)

- 기업장려지구는 세제감면, 행정규제 완화 및 절차간소화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개별적 계획체제로 구성됨
 - 비즈니스 파크 또는 제조업지역으로 개발되거나, 일부지역은 기타 용도로 개발되기도 함
- 지정후 10년간 유효하며, 주요 인센티브로는 계획허가 자동승인·세율인하·건축비·세액공제·기반시설 정비 등이 있음
- 일부 업종의 경우는 EU연합의 보조금지제도에 의하여 기업장려지구에 입주할 수 없음
 - 입주불가업종은 합성섬유·자동차·조선·석탄·철강·금속·농업·식품가공업·어업 등이 있음
- 주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사업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지출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 공표된 계획에 따라 개발시 개별적인 허가가 생략되는 등 개발절차 간소함
- 산업교육과세 및 ITB(Industrial Training Boards)에 제공하는 요구자료 면제
- 정부 요청 통계자료 감면

□ 이 밖에 공항 및 항만 인접지역에 보세물품은 저장·처리시 수입세(Import Duty)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유지역(Free Zones), 낙후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목표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지역(Assisted Area)등이 있음

- 신규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초기부터 지역선별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2) 중국 포동신구(浦東新區)의 산업입지제도

(1) 개요

□ 중국은 4대 경제특구(심천, 주해, 산둥, 하문) 설치 이후 1984년 항만도시를 중심으로 개방지역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浦東新區官理委院會가 설립되어 경제특구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됨

- 심천 등의 경우와 달리 포동신구의 개발에 중앙정부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는 상해시정부, 상해시 포동신구정부가 담당하고 개발계획 실행은 주요 민간개발기업이 담당함

□ 2000년도 포동신구의 수출입 총액은 25,486백만불에 이르고 있으며, 총수출액은 9,580백만불로 상해시 총수출액의 37.8%에 이르고 있음

(2) 토지이용

□ 토지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Lease)와 장기간 토지임대방식인 토지사용권 분양(Transfer)으로 구분되며, 토지사용권 분양의 경우는 계약기간내 토지사용과 관련된 제약이 없음

- 용도별 토지사용권의 최고기간은 다음과 같음
 - 주 택 : 70년
 - 공업지역 : 50년
 - 상업·관광·오락지역 : 40년 등

(3) 포동신구 주요 4개 개발소구

□ 육가취금융무역구(陸家嘴金融貿易區)

- 포동신구의 중심에 위치한 육가취금융무역구 총면적은 28km²로 금융·무역·상업집적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1단계로 기개발된 지역(면적 : 6.8km²)에는 48개의 외국은행, 6개 외국계 보험회사 등이 입주해 있음
- 상해시 증권거래소, 부동산거래센터, 재산권교역소 등 주요 기관이 위치함

□ 금교수출가공구(金橋輸出加工區)

- 제조업 중심의 개발구로 377개의 국내·외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총 투자액은 8,720백만불(2000년말 기준)임
- 전체 생산액은 465백만위안(2000년말 기준)이며, 총생산액의 70%는 텔레커뮤니케이션·전자부품·의료·식품·유전공학·자동차·컴퓨터 등 첨단기술업종이 차지함. 주요 입주기업으로는 GM, 상해 Bell, 상해 Sharp 등이 있음
- 금속수출가공구의 생산액은 기술집약적산업 등 고도의 생산성과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50% 수준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외고교보세구(外高橋保稅區)

- 포동신구의 북동쪽, 양쯔강 후미에 위치한 외고교보세구의 총면적은 10km²으로, 보세창고·국제무역 및 전시장·수출가공업종 등이 위치한 종합적인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총수출입액은 7,623백만불임
- 총지정면적 중 6.4km²가 개발되어 이 중 35백만m²가 상업거주지역·표준공장·전시관으로 건설·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말까지 4,383건의 프로젝트에서 5,350백만불이 투자되었음. 주요 입주기업으로는 TNCS·Intel·HP·Philips·IBM·JVC 등이 있음

- 지역내에는 부품·제품·섬유보조물·통신기기부품 등을 취급하는 10개의 보세판매장이 있음
- 외고교보세구 항구는 14개의 국제물류 루트를 운영중에 있으며, 2000년도 처리용량은 1,209,700TEU로 전년도 대비 30.4% 증가하였음

□ 장강고과기원구(張江高科技園區)

- 상해 과학기술 활용과 국내외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첨단산업 집중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됨
- 총면적은 25km²로 기술혁신기지·의료 및 IT 기술기지·소프트웨어 파크 등으로 특성화되어 의료·제약, 생명공학 관련 15개의 R&D센터가 입주해 있음
- 2000년말까지 장강고과기원구는 238건의 프로젝트에 투자금액은 3,667백만불이며, 총생산액은 4,123백만위페로 전년대비 60% 이상의 증가를 보임

3) 싱가포르의 산업입지제도

(1) 개요

- 1958년 싱가포르개발시행령 제4조에 의해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기초로 수정·보완되고 있음
 - 매 5년마다 관계기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함
-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안에는 구획재편·용적률 변경·성문규정의 내용 변경·보전지구의 설정 등이 포함됨

(2) 토지이용

- 산업용지의 임대기간은 30년이며,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투자위원회에서 1회에 걸쳐 30년의 연장이 가능함

- 임대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4% 정률 인상하는 고정임대료와 5.5% 이내에서 조정되는 변동임대료 등 두가지 형태가 있음

□ 표준공장, 아파트형 공장 등 직접 공장을 건설한 후 임대하고 있으며, 실수요기업의 요구에 따른 주문형공장도 건설중임

- 공장유치를 위한 무료 기반시설 지원은 없으며, 지원내용은 분양가에 포함시키거나 개발자가 직접 시설해야함.

□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소유를 제한하며,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법무부의 사전 취득허가를 받아야 함

(3) 주룽도시공사(Jurong Town Corporation : JTC)

□ 싱가포르의 산업단지개발은 주로 1968년 6월에 설립된 주룽도시개발공사(JTC)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싱가포르 산업단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7,000여 업체가 입주한 싱가포르 내 33곳의 산업지역을 관장하고 있음

- Housing & Development Board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 일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이 개발한 사례는 약 10% 정도임

□ JTC는 싱가포르과학단지(Science Park) 및 Business Park 건설, 기존 공업단지의 재개발, 기술연구소의 설립 등 다양한 개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척·단지재개발·첨단단지 조성·해외단지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음

- JTC는 지식기반경제에 있어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일·주거·놀이활동 등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식의 복합사용공간인 I-PARK 21과 One-north 라는 새로운 산업집적지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4) iPark 21

□ iPark 21은 신개념 첨단산업 집적시설로, 전기전자·통신·미디어·하이테크 등 광산업 관련 제조업 유치목적으로 건설됨

- 2000년 11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후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고 지하철(MRT) 및 도로접근성이 좋은 Paya Lebar지역에 건설함(면적 : 15만 m²)

□ 임대기간 및 가격

- 임대기간은 기본적으로 30년이며, 투자위원회에서 심사후 임대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음
- 임대가격은 30년 임대시 300불/m², 60년 임대시에는 360불/m²임

□ 산업집적시설 이용규칙

- 총면적중 60% 이상을 산업활동 및 이와 관련된 보조활동공간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40%도 통로 및 산업활동 지원지역으로 활용되어야 함

4) 말레이시아의 산업입지제도

(1) 개요

□ 말레이시아는 현재 국가의 주력산업을 조립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는 2차 'Industrial Master Plan'을 추진중에 있음

- 정책적으로 8대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육성하고 있으며, 8대 주력산업은 전기전자, 화학, 직물·의류, 운송, 재료, 기계장비, 자원처리 및 농업기반 식료품 등임

□ 또, 'Vision 2020'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2020년까지 지식사회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첨단지식기반산업 집적지인 Multimedia Super Corridor(MSC)를 구축하였음

(2)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더(Multimedia Super Corridor)

□ 첨단 정보인프라를 갖춘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길이가 50km, 폭 15km인 대단위지역으로 말레이시아 국제공항과 쿠알라룸푸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의 Smart City(푸트라자야, 사이버리아)가 있음

- 푸트라자야 : 신행정수도로 전자정부개념을 도입한 첨단 행정서비스 제공
 - 사이버리아 : 멀티미디어산업, 연구개발센터 및 대학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있는 첨단 전자도시를 표방하는 신도시로, 국제무역 다국적회사들을 중심으로 개발과 입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현재 689개 업체와 24개 교육 관련기관, 4개의 인큐베이터 등 총 717개 기관이 입주해 있음
- 입주 가능업종은 멀티미디어제품 생산 및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전문지식인력을 채용하고, MSC 발전에 공헌할만한 기술이전 또는 말레이시아 경제선도산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센티브·입주업종제한·관리기관 등은 다음과 같음
- 재정 인센티브
 - Pioneer Status :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 투자세 면제
 - 보조금 수혜자격 부여(말레이시아 투자지분 51% 이상인 기업에 한함)
 - 해외자금차입 자유
 - 비재정 인센티브
 - 말레이시아 정부 공인 MSC Status 부여, 입주기업체 대외신뢰도 제고
 -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 제공 및 저렴한 통신요금
 - 국내외 지식인력 무제한 고용
 - 기업소유권의 자유보장
 - 지적재산권 및 사이버법률의 보호
 - 인터넷 무검열 보장
 - MDC를 통한 효과적인 원스톱서비스 제공
 - 입주 불가업종
 - 제조업, 무역업, 지원기관 등

- 관리기관 : 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MDC)
 - MSC의 총괄 기획, 건설,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MSC의 완벽한 건설과 운영을 위한 20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MDC 직원들의 신분은 한국의 정부투자기관과 유사한 반민반관 성격임

(3) 투자유치 관련 산업인프라

□ 산업단지

- 각 지방정부의 경제개발공사(SEDC) 및 지역개발청(RDA)에 의한 정부개발단지와 민간업체에 의한 민간개발단지로 구분함
- 정부개발단지는 1997.7.1일 현재 전국에 222개가 개발·운영 중이며, 72개의 신규단지 조성을 추진중이고, 최근 민간부문의 산업단지 개발참여가 활발함

□ 자유지역(Free Industrial Zone: FIZ)

- 입주대상 : 수출비중이 80% 이상인 회사로 원자재 및 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회사
- 인센티브 : 제조용 원자재, 부품, 기계류와 장비 등의 통관절차 최소화 및 무관세 수입, 완제품 수출절차 최소화
- 운영현황 : 현재 14개의 자유지역 지정·운영중

5) 한국의 산업입지제도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

- 분양위주의 한국의 산업용지 공급방식은 공장설립형 투자(Greenfield형 투자)시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초기 투자비용의 경감을 통하여 원활한 공장설립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조성으로 임대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공장 설립형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함

- 외국인투자비율이 높고, 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입주함으로써 국내 산업발전 및 외국인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하였음

(2) 외국인투자지역

□ 지정목적

- 대규모 공장설립형 투자자를 위하여 수요자중심의 산업입지 공급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역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함
- 2001년말 현재 7개 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총면적은 504천평, 총투자금액은 848백불에 이룸
- 투자국별로는 일본이 3개사로 가장 많고, 미국·싱가포르·이탈리아·독일이 각 1개사임
-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 지정조건

- 고도기술수반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
 - 기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3,000만 불 이상이며,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 관광업
 -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로 2,000만불 이상
 - 제주도나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종합휴양업으로서 3,000만불 이상

- 물류업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단지 운영 및 항만시설운영사업
- 항만배후 단지내 화물운송사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시설운영업, 화물운송 주선업 등의 3,000만불 이상

□ 인센티브

-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음(외국인투자촉진법 제19조)
-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임대료 감면혜택 외에도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와 의료·교육·주택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에서는 다른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제사항들에 대해서도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토지분할의 경우 규제적용 예외, 수출입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 제한 적용배제,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배제 등임

(3) 자유무역지역

□ 일반현황

- 1970년 수출 위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971년 마산, 1974년 익산수출자유지역이 설치되었음
- 이후 2000년 1월 동 법률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공식명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변경됨
- 현재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1,254천㎡ 규모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마산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 및 대불산업단지내 신규 지정을 추진중에 있음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업체 110개사중 외국인투자기업은 53개사이며, 외국인투자 총금액은 2억 800만불, 2001년 총수출액은 46억 400만불임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입주업종은 전기·전자와 정밀기기이며, 익산은 귀금속과 섬유이고, 현재 조성중인 군산자유무역지역은 자동차부품, 기계업종 위주로 특화할 예정임

□ 인센티브

- 자유무역지역의 지원내용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함께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음
- 또한 자유무역지역은 일종의 보세구역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와 시설재에 대한 관세가 유보됨
- 이와 함께 부지 임대가격도 다른 산업단지에 매우 저렴하며, 임대기간은 10년이나, 계속 연장이 가능함

(4) 관세자유지역

□ 지정목적 및 요건

- 정부는 우리 나라가 동북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항구나 공항 및 인접배후지역을 관세법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관세자유지역제도를 99년 12월에 도입하였음
-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관세자유지역의 지정요건은 공항·항만·유통단지·화물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을 충족시키는 경우임

- 관세자유지역에서는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면제와 국내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

□ 운영현황

- 2002년 10월말 현재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02년 1월에 부산항(1,277천㎡)과 광양항(1,388천㎡)이며, 인천항(1,712천㎡)은 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음

2. 산업입지제도 특징 및 시사점

□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 등을 확대, 운영하여 투자유치 촉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산업입지제도는 외국인전용단지·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관세자유지역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지정권자는 외국인전용단지과 자유무역지역은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지역은 시·도지사, 관세자유지역은 재정경제부장관임
- 지정위치는 외국인전용단지는 산업단지내, 외국인투자지역은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은 항만·공항·주변지역 및 산업단지내이며, 관세자유지역은 항만·공항이 인접한 배후지역에 지정됨
-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전용단지는 충남 천안·충북 오창·광주 평동·전남 대불·경남 진사·경북 구미 등 6개 단지
 - 외국인투자지역은 경남 사천·충남 천안·경남 양산·전북 완주·전남 여천·충남 연기·충북 음성 등 7개 지역

-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 익산 · 군산 · 대불 등 4개지역
- 관세자유지역은 부산항 · 인천항 · 광양항 등 3개지역

< 표 III-1 >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구 분	외국인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지 정 근 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지 정 자	산자부장관	시 · 도지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필요)	산자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지 정 위 치	산업단지내	제한없음	항만,공항주변지역, 산업단지	항만,공항 및 배후지역
입 주 자 격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지분 30% 이상, 단 평등, 대불은 1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국내외 기업 제조업,물류업,무역업,지원서비스업(외국인지분률 10% 이상)	-국내외 기업 물류업,지원서비스업
지 원 내 용	-임대료 · 100만불이상 고도 기술수반:무상 · 1,000만불 이상 일 반제조업:75% -세제지원 · 국세:7년 100%, 3년 50% · 지방세 : 5년 100%, 3년 50%	-임대료:100%감면 -세제지원:좌동 -기반시설지원 -타법률 적용 배제 등	-임대료:최대 100% -세제지원:좌동 · 자본재도입시관세, 특소세,부가세면제	-임대료:최대 100% -국세면제:좌동 -관세,부가세면제 -지역내 이동물품에 대한 세관관리 생략
지 정 현 황	-6개 단지 광주평동, 충남천안, 충북오창, 전남대불, 경남진사, 경북구미,	-7개 지역 충남천안,충남연기,충북음성,전북완주, 전남여천,경남사천, 경남양산	-4개 지역 마산, 익산, 군산, 대불	-3개 지역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 산업입지정책은 각국의 특성 및 지역산업 진흥정책과 연계되어 다양한 형태로 개발·운영되고 있음

- 영국은 낙후지역내 창업시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은 일반적으로 북아일랜드지역, 폐광지역 등을 지칭함
- 중국은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개발·발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서부 내륙지방 투자시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민간이 개발에 참여한 포동신구는 지역별 특성을 갖고 개발·육성·지원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투자유치 및 산업진흥정책은 노동집약적 산업육성을 지양하고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하여 MSC(Multimedia Super Corridor)등 첨단 산업 집적시설 개발·운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추진중임
- 국토가 협소한 싱가포르의 경우는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위하여 전통산업단지 개발·운영에서 산업집적시설이라 통칭되는 최첨단 비즈니스 파크 (Total Business Solution) 등의 건설을 통하여 지식·정보 등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전략을 추진중임

3. 한국의 산업입지제도 발전방향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 및 인센티브(외국인투자촉진법 18조)를 차별화하고 지역산업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투자금액 5천만불이상, 기개발된 산업단지의 경우는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이고 상시 고용규모 300명 이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책효과가 반감되게 됨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조건을 다양화하고, 이를 지역산업정책과 연계시킴으로써 산업집적 또는 발전정도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적용¹⁾을 모색해야 함

- 즉,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또는 낙후지역에 한해 상기 규정의 차별적 적용을 모색함으로써 산업단지 분양활성화 및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운영 개선

- 산업자원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관리지침²⁾ 제6조 1항에 따르면, 신규 지정시 1개 단지의 면적은 660천㎡(약 20만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제한이 있으며, 많은 수의 입주기업체를 유치할 수 없음
- 따라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지별로 임대 면적당 최소 투자금액 등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정하여 토지 과다소유문제 및 사업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입지정책인 외국인투자지역제도에 대한 체계적 홍보를 통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함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외국인투자업체의 경우라도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지정시 국가·지방정부간 투자비율 조정 검토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에는 국가와 지방이 50 : 50 분담하고 있으나, 외국인기업전용공단(오창, 구미, 진사)의 경우는 90 : 10으로 분담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부담이 많은 외국인투자지역보다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선호할 수 있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국가·지방정부 분담율을 외국인기업전용단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1)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적정후보지 선정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2

2)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20호

IV. 조세제도

1. 각국의 조세제도 현황

1) 영국의 조세제도

(1) 법인세

□ 법인세율은 2002~2003년도부터 시작세율이 0%, 소기업용 세율은 19%, 기준세율은 30%로 인하됨

- 과세기준이 10,001~50만파운드 이거나 300,001~1.5백만 파운드인 경우 기준 19/400 또는 11/400의 계수를 적용, 일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한계공제제도(Marginal Relief)를 시행하고 있음

$$\cdot \text{한계공제액} = (\text{한도액 상한} - \text{순이익}) \times \text{한계공제비율(계수)}$$

- R&D지출에 대하여는 현재 100% 공제해주고 있으며, R&D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2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특정 R&D지출에 대하여 추가로 25% 공제해 주도록 개선하였음

< 표 IV-1 >

법인세율

(단위 : £)

구 분	과세기준	2001~2002년도	2002~2003년도
시작 세율	10,000 이하	10%	0%
계 수	10,001 ~ 50,000	19/400	19/400
소기업용 세율	50,001 ~ 300,000	20%	19%
계 수	300,001 ~ 1,500,000	11/400	11/400
기준 세율	1,500,000 이상	30%	30%

자료 : Inland Revenue of UK(www.inlandrevenue.gov.uk)

(2) 소득세

□ 소득세는 과세표준액으로 1,920파운드까지는 시작세율을 적용하여 10%, 1,920파운드 초과 29,900파운드 이하는 기준 세율을 적용하여 22%, 29,90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고세율 40%를 적용함

- 기본공제금액은 일반 개인이 4,615파운드이며,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경우 6,100파운드, 75세 이상인 경우 6,370파운드로 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193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기혼부부공제 5,465파운드, 75세 이상 부부공제 5,535파운드, 193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부부에 대한 최저부부공제 2,110파운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음

< 표 IV-2 > 소득세율 (단위: £)

구분	과세표준 (총소득 - 공제금액)		소득세율	배당소득	이자소득
	초 과	이 하			
시작세율	0	1,920	10%	10%	10%
기준세율	1,920	29,900	22%	10%	20%
고세율	29,900	-	40%	32.5%	40%

자료: Inland Revenue of UK(www.inlandrevenue.gov.uk)

- 신탁(Trusts)에 대한 소득세율은 34%이나, 스케줄F신탁(Schedule F Trusts)인 경우에는 소득세율 25%를 적용함

< 표 IV-3 > 신탁(Trusts)에 대한 소득세율

구분	세율
신탁 (Trusts)	34%
스케줄F 신탁 (Schedule F Trusts)	25%

자료: Inland Revenue of UK(www.inlandrevenue.gov.uk)

(3) 배당소득

- 영국거주 법인이 영국거주 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영국거주 법인이 비거주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

(4) 자본이득세

- 자본이득세는 개인 또는 장애인이나 상속에 대한 신탁의 경우 연간 공제액이 7,700파운드이며, 기타 신탁의 경우 3,850파운드까지 공제할 수 있음

과세표준액	세 율
0 ~ 500	5 %
501 ~ 2,000	10 %
2,001 ~ 5,000	15 %
5,001 ~ 20,000	20 %
20,001 ~ 40,000	25 %
40,001 ~ 60,000	30 %
60,001 ~ 80,000	35 %
80,001 ~ 100,000	40 %
100,000 초과	45 %

자료 : China Investment Guide,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P. R. China, P 76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는 유형 재화 및 특정 용역의 공급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표준세율은 17%이나, 농산물·식용유·상수도·마초·비료·농약류·농기계 등의 경우에는 좀 더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4) 사업세

사업세는 부가가치세(VAT)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 부동산 매매 및 중국내 무형자산의 이전을 포함한 사업활동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적용세율은 3단계로서, 최저 3%(운송 및 통신수수료)에서 최고 20%(연예사업)까지 부과하고 있음

(5) 소비세

부가가치세(VAT)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소비세는 담배 및 주류를 포함하여 특정 호화 사치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11개 대상품목(담배·알코올 또는 알코올음료·화장품·피부 및 모발보호제·

보석류·화약류·휘발유·디젤·자동차 타이어·모터사이클 및 자동차)에 대하여 14단계의 세율로 최저 3%에서 최고 45%까지 부과하고 있음

(6) 농업세

-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세를 별도로 과세하고 있음. 조세부과방식은 특정 형태의 토지에 대한 연평균 수확량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농업세율은 최저 13%에서 최고 19%까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나 평균농업세율은 15% 수준임

(7) 인지세

- 인지세는 “특정 문서”를 생산하는 개인 및 실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특정 문서라 함은 구매 및 판매·프로세스작업에 대한 착수·건설공사계약·자산임대·재화운송·보관 및 보호·자금 대부, 자산 및 기술에 대한 보험·양도·회계장부·권리 및 라이선스와 관련한 등록증서·기타 재정부가 과세대상으로 정한 문서를 지칭하며, 당해 거래의 가치에 따라 최저 0.005%에서 최고 0.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각 허가증명서 및 회계장부는 각각 5위안 인지를 첨부해야 함

(8) 도시부동산세

- 외국인이나 외자기업이 소유하는 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원가의 80%)에 대하여 1.2% 세율을 도시부동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12% 세율은 도시부동산세로 부과하고 있음

(9) 자동차 및 선박세

- 외자기업이 소유하는 자동차 및 선박에 대하여 자동차 및 선박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세액은 승용차의 경우 대당 320위안, 트럭의 경우 톤당 60위안, 모터사이클의 경우 2륜에 대하여는 대당 60위안, 3륜에 대하여는 대당 80위안을 부과하고 있으며, 경 모터사이클의 경우 대당 20위안, 임시면허증은 10일 기준으로 각 세액의 3%를 부과하고 있음

< 표 IV-7 >

자동차 및 선박세(액)율

(단위 : 元)

구분	종류	단위	세액	
자동차	승용차	대	320	
	트럭	톤	60	
	모터사이클	2륜	대	60
		3륜	대	80
	경모터사이클	대	20	
	임시 면허증	10일 기준 각 세액의 3% 부과 (10일 미만은 10일)		

자료 : Shanghai Guide to Investment 2002, Shanghai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 Shanghai Foreign Investment Development Board, P 40

3) 싱가포르의 조세제도

(1) 법인세

□ 거주자 및 비거주자(외국기업 지점 포함)에 대하여 2002년 회계연도부터 법인세 22%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음

- 법인이 납부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퓨테이션(Imputation)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결손금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이월(carry forward)은 가능하나 소급(carry back)은 불가함

-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이 비거주자인 경우 이자소득 및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비거주자³⁾에게 지급하는 기술지원료 또는 경영지원료 등은 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3) 조세조약에 의거 제한세율 적용

< 표 IV-8 >

원천징수세율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개인	법인	개인	법인
배당소득	0%	0%	0%	0%
이자소득	0%	0%	15%	15%
사용료소득	0%	0%	15%	15%
지점송금세	0%	0%	0%	0%

자료 :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www.sedb.com.sg)

(2) 개인소득세

□ 거주자

- 싱가포르에 거주중인 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실제로 살고있는 자, 또는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서 고용중인 자의 경우에 거주자로 판정하며, 2만 싱가포르달러까지 비과세하고, 2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소 4%에서 최고 22%의 누진세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음

< 표 IV-9 >

소득세율⁴⁾

(단위 : S\$)

과 세 소 득		
초 과	이 하	세 율
20,000	30,000	2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4%
30,000	40,000	400 + 3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6%
40,000	80,000	1,000 + 4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9%
80,000	160,000	4,600 + 8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60,000	320,000	16,600 + 16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320,000	-	47,000 + 32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자료 :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www.iras.gov.sg)

4) 2003년도부터 적용

□ 비거주자

- 비거주자 개인이 고용계약에 의거 연간 60일 이하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해 고용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연간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내국 고용소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15%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율 가운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비거주자인 임원의 보수 등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할인된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2003년부터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3) 재산세

- 산업용 또는 상업용 재산은 연간 임대가에 대하여 10%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4%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년 1월과 7월에 재산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물품과 서비스세

- 싱가포르 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시 또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수입시 부과하며, 3%(2003년부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5) 인센티브제도

- 개척자격 인센티브제도(Pioneer Status Incentive), 개발 및 확장인센티브(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투자공제 인센티브(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허가한 해외차입금(Approved Foreign Loan Scheme), 허가한 로열티(Approved Royalties), 벤처캐피탈인센티브(Venture Capital Incentive), 운영형 지역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 사업형 지역본부(Business Headquarters), 기술개발에 대한 중복공제제도(Double Deduction for R&D Expenses) 등의 인센티브제도가 있음

구분	인센티브
개척자격인센티브 (Pioneer Status)	개척자격으로 사업중 발생한 이익에 대한 조세 감면
개발 및 확장인센티브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법인세율 13% 적용
투자공제인센티브 (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생산기계에 대한 신규투자액의 최고 50%까지 소득 감면
허가한 해외차입금 (Approved Foreign Loan Scheme)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
허가한 로열티 (Approved Royalties)	로열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벤처캐피탈인센티브 (Venture Capital Incentive)	주식매매에 따른 손실액 100% 소득 감면
운영형 지역본부 (Operational Headquarters)	특정 서비스소득에 대하여 10% 세율 적용
사업형 지역본부 (Business Headquarters)	경제확장 인센티브법에 의거 인센티브 제공
기술개발에 대한 중복공제 (Double Deduction for R&D Expenses)	특정 기술개발비에 대한 중복공제제도

자료 : The Investor's Guide to Singapore, 2002 Edition, Singapor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 41 -42

4) 말레이시아의 조세제도

(1) 개요

일반적으로 거주자 및 거주기업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 소득세는 전년도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18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거주자로 판정

□ 196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기업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거래, 직업 또는 사업상 발생된 수입·이익, 고용에 따른 급여·보수·배당금·이자소득·임대수입·로열티 등이 해당되며, 결손에 대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차기 이월(carry forward)이 가능함. 세무당국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개발세(2%)를 폐지한 바 있음

(2) 법인세

□ 법인소득세율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8%의 세율을 부과함

- 정부에서 허가한 외국회사의 운영형 지역본부(Approved Operational Headquarters Company)의 경우 10% 우대세율을 적용
- 과세대상 소득은 소득발생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전액 공제함으로써 산출하며 환경보존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대한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
- 손실이나 우발채무를 위한 특별 준비금·적립금과 장부상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혜택 배제

□ 석유생산업체의 경우 석유소득세(Petroleum Income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음

< 표 IV-11 > 석유소득 세율

구 분	평가기간	세율
일반지역	1976 ~ 1993	45%
	1994 ~ 1997	40%
	1998년 이후	38%
공동개발지역	최초 생산연도부터 8년간	0%
	이후 7년간	10%
	그 이후부터	20%

자료 :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www.hasilnet.org.my)

(3)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후)에 대하여 1%에서 28%까지 차등 부과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 세액감면을 허용하고 있음

< 표 IV-12 >

소득세율⁵⁾

(단위 : RM)

과 세 소 득		세 율
초 과	미 만	
2,500	5,000	2,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
5,000	20,000	25 + 5,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3%
20,000	35,000	475 + 2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7%
35,000	50,000	1,525 + 35,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3%
50,000	70,000	3,475 + 5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9%
70,000	100,000	7,275 + 7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100,000	250,000	14,475 + 1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250,000		54,975 + 250,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28%

자료 :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www.hasilnet.org.my)

(4) 원천징수세

- 거주자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60일 미만 거주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비과세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이자소득과 연예업소득에 대하여는 15%, 로열티소득이나 특정소득(동산이동, 기술자문, 서비스, 지원, 기계설비 설치 서비스, 무형자산과 관련된 개인서비스 등)에 대하여 10%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5) RM2,500까지 비과세. 비거주자 개인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 소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8%의 세율을 적용

< 표 IV-13 >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

소득 구분	세율
특정 소득(동산이용, 기술자문, 서비스 지원, 기계설비 설치 서비스, 무형 자산과 관련된 개인서비스 등)	10%
로열티 소득	10%
이자 소득	15%
연예업 소득	15%

자료 : 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www.mida.gov.my)

(5) 양도소득세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Real Property Gains Tax)를 부과하고 있음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내의 부동산 처분은 30%, 3년차에 대하여 20%, 4년차에 대하여 15%, 5년차에 대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6년 이상의 부동산 처분에 대하여는 기업은 5%, 개인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비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30%,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표 IV-14 >

양도소득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2년 이내	30%
	3년차	20%
	4년차	15%
	5년차	5%
	6년차 및 그 이후	기업
개인		0%
비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	5년 이내	30%
	5년 이후	5%

자료 : 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www.mida.gov.my)

(6) 판매세

-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시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인 제품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식료품을 제외한 식료품과 건축자재에 대하여는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담배와 주류에 대하여는 담배 25%, 주류 20%의 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음. 주요 식료품, 생필품, 주요 건축자재 등 기본적인 물품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음

(7) 인센티브제도

- 1986년에 제정된 투자촉진법에 의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센티브제도에는 개척자격인센티브(Pioneer Status)·투자세공제(Investment Tax Allowance)·간접시설비공제(Infrastructure Allowance)·산업조정공제제도(Industrial Adjustment Allowance) 및 수출장려중복공제(Double Deduction for Promotion of Exports) 등이 있음

< 표 IV-15 >

말레이시아의 투자인센티브제도

구 분	인센티브
개척자격인센티브제도 (Pioneer Status)	5~10년간 전액 또는 일부 소득공제
투자세공제제도 (Investment Tax Allowance)	5~10년간 투자금 전액 또는 일부 소득공제
간접시설투자비공제제도 (Infrastructure Allowance)	5년간 간접시설투자비 전액 또는 일부 소득공제
산업조정공제제도 (Industrial Adjustment Allowance)	산업조정에 따른 발생 경비 전액 소득공제
수출장려중복공제제도 (Double Deduction for Promotion of Exports)	특정 비용에 대하여 중복하여 소득공제

자료 : 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www.mida.gov.my)

5) 한국의 조세제도

(1)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금액 1억원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27%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

< 표 IV-16 >

법인세율

과세표준금액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5%
1억원 초과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자료 : 국세청(www.nta.go.kr)

(2) 소득세

- 개인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금액 1,000만원에 대하여 9%, 1,0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에 대하여 18%, 4,000만원을 초과한 4,000만원에 대하여 27%, 8,000만원을 초과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는 3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세율표와 같다.

< 표 IV-17 >

소득세율

과세표준금액		세 율
초과	이하	
-	1천만원	과세표준의 9%
1천만원	4천만원	9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
4천만원	8천만원	630만원 +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
8천만원	-	1,710만원 +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자료 : 국세청(www.nta.go.kr)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세율과 동일한 9~3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등기양도인 경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배당·이자·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거주자의 배당소득과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표 IV-18 > 원천징수 세율

구분	거주자·내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제한세율
배당소득	15%	-	25%	25%	5 ~ 15%
이자소득	15%	15%	25%	25%	10 ~ 15%
사용료소득	15%	-	25%	25%	10 ~ 15%

자료 : 국세청(www.nta.go.kr)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토록 하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4) 증권거래세

-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사 또는 양도자에 대하여 양도가액 또는 평가액의 0.5%(탄력세율 : 0.15~0.3%)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음

(5) 특별소비세

- 특정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7~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30%의 탄력세율을 부과할 수 있음

(6) 관세

- 수입·통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7) 교육세

-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의 경우 최저 0.5%~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하기의 교육세율표와 같이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표 IV-19 > 교육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교육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
	특별소비세액, 자동차세액	15~30%
	교통세액	15%
	주세액	10~30%
지방교육세	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20%
	균등할 주민세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우 25%)	10%
	자동차세(비영업용)	30%
	경주·마권세	60%
	담배소비세	50%

자료 : 국세청(www.nta.go.kr)

(8) 농어촌특별세

-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세액과 특별소비세,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최저 0.15%,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표 IV-20 > 농어촌특별세율

과세표준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20%
이자소득세율 10% 적용되는 가계저축·농어민조합·근로자 장기저축·소액가계저축·국공채의 이자와 우리사주배당금·소액 보험차익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골프장 입장에 따른 특별소비세	30%
기타 특별소비세	10%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0.15%
취득세	10%
경주·마권세	20%
종합토지세 : 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10%	10%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 초과금액의 15%	15%

자료 : 국세청(www.nta.go.kr)

(9) 취득세

-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차량이나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및 선박과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2%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사치성 재산이나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내의 공장 또는 법인용 부동산 및 시설 취득 시에는 중과세(3배~5배)하고 있음

(10) 등록세

- 재산권의 취득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등록세를 부과하며,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이전 등에 따른 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록세의 3배를 중과세하고 있음

< 표 IV-21 >

등록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액(율)
소유권	상 속	부동산가액	0.8%(농지: 0.3%)
	무상 취득	부동산가액	1.5%(비영리: 0.8%)
	유상 취득	부동산가액	3%(농지: 1%)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	0.8%
	공유물 등의 분할	부동산 분할가액	0.3%
소유권 외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등	부동산가액, 채권가액, 전세가액 등	0.2%
법인의 등기	영리법인	출자·증자 자본금	0.4%
	비영리법인	출자총액	0.2%
	본점 이전	건별	75,000원·건
	지점 설치	건별	23,000원·건
승용 자동차	비영업용	자동차가액	5%(경차: 2%)
기타 자동차	비영업용	자동차가액	3%(경차: 2%)
	영업용	자동차가액	2%

자료 : 국세청(www.nta.go.kr)

(11) 주민세

□ 주민세는 개인에 대하여 1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5만원, 법인에 대하여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며 다음의 주민세율표와 같음

< 표 IV-22 >

주민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액(율)
주민세(균등할)	개인	1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	5만원
	법인(자본금에 따라)	5만~50만원
주민세(소득할)	법인세·소득세·농지세	10%

자료 : 국세청(www.nta.go.kr)

(12) 재산세

- 다음의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적용 세율(0.3~5%)은 다음의 재산세율표와 같음

< 표 IV-23 > 재산세율

재산의 종류	세율
건축물	
- 주택	0.3~7%
-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5%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내 주거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0.6%
- 기타의 건축물	0.3%
선박 (고급 선박: 5%)	0.3%
항공기	0.3%

자료 : 국세청(www.nta.go.kr)

(13) 종합토지세

-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토지가액의 0.1~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음

(14) 사업소세

- 사업소 면적과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하기 사업소세율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음

< 표 IV-24 > 사업소세율

구 분	과세대상	세액(율)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300㎡이하 제외)	250원/㎡
	오염배출사업소 연면적	500원/㎡
종업원할	급여총액 (종업원 수 50명 이하 면제)	0.5%

자료 : 국세청(www.nta.go.kr)

(15)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동 기술이 국내에 도입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개발된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이고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이어야 함. 제조업 이외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2천만불 이상으로서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과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단지 및 물류산업 등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따로 정하는 사업

< 표 IV-25 >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혜택⁶⁾

적용대상	조세지원내용	감면액(율)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최초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최초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자본재 도입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신고후 3년 이내 통관시 100%
외국인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최초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고도기술제공자	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최초 5년간 100%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초 5년간 100%

자료 : 국세청(www.nta.go.kr)

6)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조례에 의거, 8년에서 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 기간 내에서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음

2. 조세제도 특징 및 시사점

□ 각국의 조세제도 중 법인세, 소득세 및 조세지원제도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표 IV-26 >

각국의 조세제도 비교

구 분		영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법인세	거주자	0~30%	10~33%	22%	28%	15~27%	
	비거주자	-	20%	22%	28%	-	
소득세	거주자	10~40%	5~45%	4~22%	1~28%	9~36%	
	비거주자	-	5~45%	15~22%	28%	-	
원천징수	배당소득	거주자	10~32.5%	0%	0%	0%	15%
		비거주자	0%	20%	0%	0%	25%
	이자소득	거주자	10~40%	0%	0%	5%	15%
		비거주자	0%	20%	15%	15%	25%
	사용료소득	거주자	0%	0%	0%	0%	15%
		비거주자	0%	20%	15%	10%	25%
조세지원제도		R&D비용 : 125% 소득공제	특정개발구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율 인하 2년간 100%, 3년간 50% 법인세 감면	개척자격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임퓨테이션 제도 도입	개척자격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지역본부에 대한 법인세율: 10%	특정사업에 대하여 7년간 100%, 3년간 50% 법인세 감면	

- 법인세의 경우 비교대상 5개 국가가 비슷하지만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15%의 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소득세의 경우 비교대상 5개 국가중 영국이 높은 수준이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임
 -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경우 대부분의 소득에 대하여 한국의 원천징수세율이 상대 국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특히, 투자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중국·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에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내의 다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회사내 유보금에 대한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원제도는 한국이 타국가에 비하여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보다 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 즉 한국의 조세지원제도를 보면, 실제로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기업이 특정 산업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음
 - 영국,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R&D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한국은 R&D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서 부여하고 있는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R&D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 이와 반대로 거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의 경우 여러 개발구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우대세율인 15%의 저세율을 적용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유인책으로 추가적인 우대정책을 쓰고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정책 때문에 많은 외국인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음

3. 한국의 조세제도 발전방향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치상으로는 한국의 조세제도가 타 국가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크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전술한 수치 이외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및 가산세제도와 여러 명목의 목적세 등을 고려한다면 타 국가에 비해 조세부담이 많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아시아지역 내에서 다국적기업의 중심지역으로 변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율의 인하, 특정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마련, 복잡한 조세제도의 단순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가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조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즉,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인하하고, 기존의 조세지원제도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사업, 즉 고도기술수반사업이거나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등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대체에너지시설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R&D 및 동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확대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시행중인 기존의 공제제도를 보완하여 공제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이므로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 소득에 대한 비과세정책을 도입하여 주주의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조세제도를 단순화하여, 한국의 조세제도를 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술한 조세지원정책을 도입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아시아지역 내 다국적기업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거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과도 경쟁할 수 있을 것임

V. 노동제도

1. 각국의 노동제도

1) 영국의 노동제도

(1) 노동정책

□ 전통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관계는 의회의 법률로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고 있으나,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있음

-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쟁의조정 등의 노사자율 중시

□ 최근에는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만성적 재정적자·생산성 저하·경쟁력 약화·무역적자·끊이지 않는 파업 등 불명예스러운 영국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민영화·세금인하·재정적자 억제·공공지출 삭감·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전개하여 경제성장 및 매력적인 외국인투자 대상 국가라는 평가를 얻음

-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시간의 최저기준 보장, 노동조합 민주주의 및 노동쟁의에 대한 규제 등

□ 결론적으로 영국의 노동정책은 전통적인 노사자치주의 원칙하에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외국인투자유치 포함)로서 다양한 노동규제정책을 전개 중임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노동조합 조직에 있어 법적인 제한이 없으며 산업별·직종별·기업별 등 자유로운 형태로 조직이 가능하나, 전국단위의 산업별 조직 하에 기업단위의 지부가 일반적임

-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의 조합비로 부담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정치기금 설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원, 정치자금 기부 등이 허용
- 단체교섭은 임의주의 전통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일정한 노동조합을 교섭상대로 인정하면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되며(노동조합 인정 및 인정취소제도), 복수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는 않음

(3)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노사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발생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협의로 결정함
-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행임. 즉 파업 또는 직장폐쇄시는 조합기금에서 근로자의 생계비가 보조되며 쟁의행위 중 회사의 대체근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가능함

(4) 노동쟁의 조정절차

- 노동쟁의는 1차적으로 노사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간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정부조정기구 및 중앙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알선, 중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심각한 파업의 경우 법원의 중지명령(Injunction)으로 냉각기간 설정

(5) 경영참가(노사협의회)제도

-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경영활동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영참가제도로써 주로 직장별 종업원 대표제를 통해 업적급 임금률·작업장 규율·인사계획·기계도입 및 재정문제 등을 결정하고 있음

(6)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평균 4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나, 대체로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 타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 기업 사정을 감안하여 노사간 협의를 통한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
- 주휴일은 주1일이나 단체협약상 통상 2일이며, 무급이 일반적이고 주휴일의 유·무급 결정 및 휴일근로의 할증률 등은 단체협약으로 결정됨
- 공휴일은 은행휴무일로서 8일이 있으며, 근로자의 날이 지정되어 운영중임
- 연차휴가의 일수, 부여여부 등은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자유로이 결정 가능하나, 통상 4~6주의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통상 휴가가 없음

(7) 임금 및 복리후생

- 임금에 관한 명문의 법규정이 없고, 노사간 자유로운 협의로 임금 인상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임금할증률이 결정됨
- 최저임금제가 1998년에 범제화되어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됨
 - 22세 이상 : 4.4파운드/시간(2001년)
 - 18세~21세 : 3.5파운드/시간(2001년)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 시는 휴업수당으로서 보증임금을 지급하고 있음(보증임금 = 무근로시간 × 보증임금율)
-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국가보험기금(NIC)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산재·질병·실업·노령연금, 기타 건강보조 등의 혜택을 받음

(8) 정리해고

□ 사용자가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근로자의 업무능력·자격·행태에 관련한 사유 및 잉여 노동력 또는 법률상 제한으로 고용을 지속시키기 불가능한 경우 등)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음

- 영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영업상의 이익에 비추어 특정한 종류의 작업 수행을 정지 또는 감소(일시적인 경우 포함)하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예상될 경우도 가능

□ 해고절차는 다음과 같음

- 100명이상의 인력해고시 90일(10인 이상은 30일) 이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 행정기관에 일정기간내(노동조합과의 협의의무와 같은 기간)에 사전통지

□ 통상의 퇴직연령은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이나, 실제 퇴직연령대는 매우 넓고 조기 퇴직이 보편화됨

(9)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 여성을 위한 근로시간,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특칙이 없음

□ 출산시 6주간 출산수당을 90% 지급하나 실제로는 4주에 30% 유급휴가가 가능

- 육아휴직은 산후 29주 이내의 기간 중에 14주간 가능(무급)

(10)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불공정해고 및 잉여인원 해고에 관한 법규제와의 관계에서는 해고로 취급

□ 단시간근로자는 스스로 파트타임노동자라고 답한 자가 해당되나, 95년 가을(9~11월)까지는 통상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를 지칭하였음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근로시간 및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부여 가능하며, 서면계약으로 기타 근로조건을 결정함

□ 파견근로에 대한 명문의 법규정이 없으나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파견근로 업무 및 파견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음

2) 중국의 노동제도

(1) 노동정책

□ 1992년 이후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하면서 노동정책도 전통적인 인치(人治)를 지양하고, 「법(法)에 의한 지배」의 확립을 적극 추진중임

- 노동법규 적용을 강화하고 법규정비를 추진중이며, 199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화민국공화국 노동법이 바탕을 이룸

□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쟁의가 증가 추세이며, 정부는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를 제정하여 기업과 근로자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로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형성되도록 적극 관여하고 있음

- 노동계약제의 개선 및 실시 확대, 단체협상 및 단체계약제도의 확립, 근로기준 개선작업 강화, 노동쟁의 처리절차 보완, 관련 법규 완비 등

□ 1986년부터 평생고용제에서 전국적인 노동계약제의 실시가 추진되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1993년부터 노동관리체제의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 배치에도 본격적인 시장메커니즘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인력수급 쌍방간의 자유선택, 노동력 이동의 활성화,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수준 결정 등 시장메커니즘이 작용

- 1997년 현재 노동시장의 시장화 정도는 70% 수준으로 추정

- 1998년~2000년간을 전환점으로 강도 높은 국유기업(도시집체기업 포함)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약 20~30%로 추정되는 과잉인력에 대한 고용조정이 진행중

- 과거 계획경제하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불허되었음. 즉, 종신고용, 국가규정에 의한 엄격한 임금수준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주택, 양로, 의료 등)의 직장 부담 등이 근로조건외의 골간이었음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공회(公會)는 중국 공산당의 하부조직으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실업방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공회의 설립을 독려하는 입장임
- 공회설치 및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공회를 결성, 조직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됨
 - 공회의 기능은 근로조건외의 유지·보호기능, 입법·쟁의조정 등에 대표로 참여, 생산성향상, 회원복지 등의 건설기능, 회원교육기능 등 4가지
 - 공회는 친목단체 성격이 짙고 회사와 협조적이며 직원단합대회, 야유회, 생산성 향상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 공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있고 단체행동권은 없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위법으로 市 노동국 또는 공안에 고발할 수 있음
- 공회가입에는 제한이 없으며,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관리직은 물론 외국인 사장도 가입범위에 포함시킨 예가 있음

※ 노동조합(公會) 현황

- 노동조합(公會)의 최상층 조직은 25년에 설립된 中華勞動總公會로 99년 현재 16개 산별공회와 30개 지역별(시·현급)공회가 설립
 - 1999. 1 현재 약 3.1억명의 근로자중 1.3억명이 공회 회원(약 42% 조직율)이며, 조직근로자 다수가 국유기업에 집중
- 정부는 2000년말까지 80% 이상의 외투기업에 공회를 설치토록 지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노동조합조직을 권장함
 - 외투기업의 노동조합조직율은 약 40~50% 수준이나, 노동쟁의가 증가 추세임

(3) 단체교섭

- 종전 기업내 근로자간 의견협의, 상호교류 등의 역할을 하는 공회가 점차 근로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자본주의 성향의 노동조합으로 변질되는 추세임
- 단체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집단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단체협약과 유사하며, 체결여부는 강제가 아니고 임의사항임
- 단체근로계약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대표가 교섭의 내용,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정한 후 교섭하고, 상호합의가 되면 수석대표가 서명날인하여 결정함
 - 단체계약 체결(변경, 합의해제 포함)후 7일내에 협약서(3부)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함(행정관청은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쌍방 대표에게 교부)
 - 단체노동계약은 유효기간(1~3년)만료 또는 합의로 약정된 조건충족시 즉시 종료함. 단, 유효기간중이라도 상황변경이 있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어느 일방이라도 변경 및 해제 요구가 가능

※ 중국의 노동쟁의 추이

- 정부의 고용조정과 노동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업의 증가 등에 따라 노동쟁의가 1992년에 8,150건에서 1999년에는 12만 여건으로 급증
-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외자기업 부문의 노동쟁의가 1994년 2,974건에 이어서 1996년에 10,083건, 1998년에는 다시 22,537건으로 2년간 2배 이상 폭증하여 노동쟁의 발생 1위 부문을 차지
- 노동쟁의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 및 보수 문제이고 그 다음이 보험, 복지 관련 문제임. 외자기업의 경우 특히 임금보수 문제로 인한 노동쟁의 발생 비중이 약 6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4) 노동쟁의 조정절차

□ 단체노동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의는 ① 내부조정 및 화해 ②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③ 인민법원의 순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든 폭력은 물론 집단행동이 불가능함

① 노사간 협상이 원만하지 않거나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 내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된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상호의견을 조정함

-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대표, 근로자 대표, 공회대표로 구성
- 사용자 대표는 1/3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공회대표가 담당

②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신청에 의해 지방정부에 구성된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수 있음

-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노·사·대표로 구성 (천진시의 경우 노동행정 3인, 공회 2인, 법제국 1인, 공상국 3인, 기업대표 2인)

③ 중재위원회의 중재 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음

-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만 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기소할 수 없음

□ 아래 사유에 의해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로 간주됨

- 해고, 사퇴강요 등 근로관계 종료로 발생하는 쟁의행위
- 임금·보험·복리·교육훈련, 노동보호규정 집행관련 쟁의행위
- 노동계약 이행관련 쟁의 행위
- 법규 이행관련 쟁의 행위

(5) 근로자 고용

□ 현재 국가가 직장을 배치하는 비중이 38.7%, 개인이 자체 해결하는 경우가 29.8%, 친지·지인을 통한 취업이 22.3%, 광고 등을 통한 취업이 6.7%를 차지하고 있음(중국공업발전보고, 1999)

- 외국인투자기업은 先都市 後農村, 先本地 後外地, 先本省 後外省의 원칙에 의거,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함
 - 외자기업은 우선적으로 本地의 취업 희망자나 기존의 재직자 중에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이를 통해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외지인 채용이 가능(지방정부의 허가 필요)
 - 모집·채용을 위한 신문광고시 지방정부 노동국(인사국)의 허가가 필요
- 현재 타 회사에 재직중인 자를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이전회사에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국가분배제도가 시행
- 모집·채용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기업의 월평균 임금의 5~10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채용이 무효화 될 수 있음

(6) 근로계약 및 수습기간

- 근로계약시 기업은 반드시 채용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지방정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근로계약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1~5년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1년이 가장 흔하나, 대부분 외자기업은 3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치 않으면 계약은 해지됨
- 시용기간은 업무능력 및 태도 등을 판단하여 향후 사용자가 계약을 지속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간으로 근로자도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음
 - 시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한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
 - 시용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며, 시용기간 중 임금 등 근로조건은 정식근로자 보다 낮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함

(7)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수당

-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이며, 연장근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1일 1시간이내에서 할 수 있음
 - 성수기 주문쇄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자 건강보호를 전제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1일 3시간, 1월 36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부정기 근로시간제(한국 :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및 종합계산 근로시간제(한국 :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
-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은 연장근로시 50%, 야간근로시 0%(없음), 주휴일근로시 100%, 법정 공휴일 근로시 200%를 지급해야 함
 - 가산임금의 지급기초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급도 가능

(8) 휴일 및 휴가제도

- 주휴일은 1주일에 2일(토요일과 일요일)이며 무급이고, 업무성격, 교대제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 일요일 외에도 휴일 지정이 가능함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 후 주휴일 근무 시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
- 전국민 법정 공휴일은 7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이 휴무가 됨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후 근로시 200%의 가산임금을 지급
- 연차휴가는 노동법에 1년이상 근속자에게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국무원 명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 따라 잠정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임
 - 광동성의 경우 1~5년 미만 근속자(5일), 5~10년 미만(7일), 10~20년 미만(10일), 20년 이상(14일) 등 차등 부여

□ 월차휴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나, 결혼 및 상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유급 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음

- 휴가일수 및 유급 임금수준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9) 임금결정 및 최저임금제

□ 지방별로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임금조사에 의한 대표 직종별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수준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근거 없고, 외자기업의 임금수준은 국내기업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으나 점차 사문화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미달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1~3배의 벌금을 병과 가능

□ 인센티브제의 도입으로 보조금, 수당, 장려금 등 임금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다양화되고 있음

□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은 생계비, 생산성, 물가, 비교임금 등이 있으며 외자기업은 특히 타기업과의 비교임금이 중요시 됨

(10) 업무상 질병·부상 처리

□ 업무상 질병·부상인 경우 치유기간 동안 휴직처리 되며 해고가 불가능함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장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어 임금·의료비 등을 보험으로 지원함. 산재(공장)보험에 가입치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

- 업무상 질병인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3~24개월의 휴직을 부여

(11) 고용계약의 종료(퇴직, 해고, 해고예고)

□ 정년퇴직의 경우는 기업이 정년을 정할 의무는 없으나, 이를 규정할 경우에는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됨

- 양로보험 퇴휴규정에 따른 정년 : 남자 60세, 여자 50세(간부: 55세) 이상

□ 업무외 질병, 업무능력 부족, 계약환경의 중대한 변경, 정리해고 등 상황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함

- 해고시 1년 근로에 1개월분 평균임금을 지급

- 평균임금은 해고 또는 퇴직 전 12개월간 중 정상적인 생산 또는 기업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총임금에 대한 월평균임금으로 계산

□ 징계해고로서 근로계약에 정한 징계사유(주의, 경고, 감봉, 휴직, 강등, 해고 등) 발생시 근로계약 종료가능함

· 기업의 규율이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직무상 과실· 착복 등으로 기업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중재위원회가 회사규정 여부, 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

□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상황변경으로 인한 해고, 정리해고 등의 경우에 노·사 모두 해고 또는 근로계약 해지시 상대방에 대하여 30일 전에 통고하거나 또는 해고예고 대신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한 후 즉시 해고가 가능함

- 근로자가 30일 전에 예고치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외에 사용자의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음

- 합의퇴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수습능력 결여, 징계해고, 정년 등은 원칙적으로 해고예고가 불필요

□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합의퇴직시 근속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함 (12개월이 한도)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가 기간연장에 합의치 않아 근로계약이 만료된 퇴직의 경우 경제적인 보상의무가 없음

(12) 정리해고

□ 정리해고의 경우 기업파산, 인민법원에 의한 법정정리, 해당지역 정부가 규정한 기업경영악화기준에 부합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감원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정리해고가 가능함

□ 정리해고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정리해고 30일전에 공회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감원인원·시기·경제적 보상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해야 함

② 노동행정기간에 감원방안 및 공회 또는 전체근로자의 의견에 대하여 보고

-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는 법규정상 신고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 기관의 의견을 수용치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허가에 준함

③ 감원자에게는 감원인원증명서를 발급하고 6개월 내에 신규인력 채용 시 감원자를 우선 채용함

□ 정리해고시 1년 근로에 대해 1개월분 평균임금을 경제적 보상으로 지급

(13)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 출산휴가는 90일(산전 15일, 산후 75일)이며, 난산시 15일, 다생아인 경우 1명당 15일을 추가함 (100% 임금보상)

- 출산휴가기간 중 경제적 보상 및 임신 검사비 등은 사회보험기금에서 부담 (소속회사의 근로자 월평균임금기준)하고,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는 기업이 부담

- 1세 미만 영아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00~06:00)가 금지되며, 생리휴가는 부여할 의무가 없음

3) 싱가포르의 노동제도

(1) 노동정책

- 투명한 공공정책과 기업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과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무분규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 연도별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과도한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예방하는 정책을 시행중임
-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 및 결정을 존중하되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기업의 부정, 부패에 강력한 통제와 처벌로 대응하고 있음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노사관계에 대하여 엄정히 법집행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노동조합 설립시 근로자 7인 이상이 발기하여야 하며, 설립 후 1개월 내에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등록신청을 하고, 행정관청은 심사 후 조합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노동조합 등록증을 교부함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등록취소 및 철회도 가능함. 형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원칙(일반적)
-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 조합비에서 지출함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 단, 1980년 이후 정부·정당과 노동조합간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인민행동당 및 조합간에 연락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당과 노동조합간의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인사교류를 실시중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인사 및 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가 없으며,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 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교섭요구가 가능함
 - 정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통상 2~3년이며 쟁의 중 사용자의 대체근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 등록된 노동조합은 조합원 다수의 비밀투표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고는 집단적인 행동(쟁의행위)을 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

(4) 노동쟁의 조정절차

- 노동쟁의는 ① 당사자간 교섭 ② 행정기관에 의한 화해 및 조정 ③ 노동법원에 의한 중재 순으로 해결하고 있음
- 노동쟁의가 있는 경우 노사는 1차적으로 협상가(Commissioner)로부터 7일의 기간 동안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진행됨
- 행정관청은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의무 교섭회의(Conference)를 개최하여 화해 및 조정을 결정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불참하는 노사는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함
- 조정에 의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노사는 노동조정법원(Industrial Arbitration Courts)에 중재를 요청하여 그 중재결정으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며 노사 각각 10명의 위원(Panel)으로 구성

(5)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 법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4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당 1일 4시간, 월 72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어느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2주간 8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주휴일은 1주에 1일 이상으로 무급이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11일이 있음
 -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무시 각각 100%의 할증임금을 지급

- 연차휴가는 근속이 3개월부터 1년까지는 7일이 부여되고, 이후 추가근속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 (최저 7일~최고 14일 한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별도의 임금보상(수당)은 없으며 월차휴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생리휴가도 없음

- 14일의 유급 병가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함

(6) 임금 및 복리후생

-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이며,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보수의 총액을 말함
 - 시간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은 연장근로시 50%, 야간근로시 0%(없음), 휴일근로시 100%의 통상임금을 지급

- 최저임금에 대한 법적 강제는 없으나, 매년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이 결정되도록 지도하고 있음. 임금수준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노사간 교섭으로 결정됨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여부는 특별한 법규정이 없음

(7) 고용의 종료 및 정리해고

- 고용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는 일정기간 전에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없이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임금을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함
 - 근속 26주미만 : 1일전 통보
 - 근속 26주~2년 미만 : 1주전 통보
 - 근속 2년~5년 미만 : 2주전 통보
 - 근속 5년이상 : 4주전 통보

- 고용주가 임금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2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는 계약위반이 되어 계약종료가 가능함

- 퇴직위로금은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나, 그 수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고용조정(정리해고)의 경우 근속 3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위로금의 청구가 가능하나 그 수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함

- M&A · 사업양도 · 양수 · 자회사 설립 등의 경우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자회사나 관련 회사 혹은 전혀 새로운 타 회사에 근로관계를 이전시킬 수 있음
 -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근로관계 이전 및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 설명 실시함.
 - 기존 근로조건은 유지되며, 근속기간도 계속 인정

-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1개월 내에 노동관청에 서면으로 진정이 가능함

(8)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조정, 야간근로, 휴일근로 배제 등 여성을 배려하는 법규정이 없으며 남성 근로자와 동일하며 출산휴가는 180일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만 8주(산후 4주)의 유급휴가(통상 임금)을 부여
 -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생리휴가는 없음

4) 말레이시아의 노동제도

(1) 노동정책

- 정부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을 통제하고 있음
 - 정부의 노사관계정책은 경제정책의 하부구조로 집행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하도록 적절한 가격과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노동조합 인정, 단체교섭의 대상, 파업권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엄격하므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미미함
 - 정부가 노동조합의 크기와 구조 등을 통제하고, 주요 전략산업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도 단체교섭은 실질적으로 금지됨
 -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용자의 행태가 일반적이고 정부도 이를 묵인하는 편임
- 집단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함
- 정부가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정부의 정책기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으로 바뀐 이후에도 이와 같은 정부의 기본방침은 변하지 않고 있음
 - 최저임금도 실질적으로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여 인력부족과 임금상승에 대처함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하향,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대한 여성의 야간근로 허용, 일부 선도산업에 대해 법정 최저기준 이상의 고용조건 불허용 등을 시행함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직장, 직종 혹은 업종에 종사하는 7명 이상의 노동조합원(16세 이상)이 필요하며, 노동조합설립 후 1개월 내에 노동조합등록처에 등록 후 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함
 - 노동조합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직장, 직종이나 업종에 적어도 1년이상 재직해야 함
 - 새로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행정관청(노동국)은 제2 노동조합의 등록이 두 노동조합간의 경쟁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2 노동조합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2000년 현재 563개의 노동조합(14개의 사용자협회 제외)이 있고 총 노동조합원수는 734,037명이며. 총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8% 수준임
 - 50%이상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수 500인 미만인 소형 노동조합
 - 정부는 대형 노동조합의 발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와 같은 추세는 정부가 80년대 초 이후 기업내 노동조합(In-House Union)를 적극적으로 육성함에 따라 더욱 강화
-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도 엄격히 제한함
 - 사용자의 허가 없이 영업장소에서 정상근무시간에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탈퇴를 권유하는 행위 또는 조합원이나 노동조합 간부가 되거나 되지 않도록 위협하는 것 등은 제한됨
- 외국인투자기업에 노동조합 설립의 움직임이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공권력이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고 있음
 - 전자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조합 설립이 불허되었으나, 국내외의 압력으로 1998년에 노조설립을 다시 허용, 실제로는 노조 설립이 강력히 규제됨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모든 근로자(단, 법으로 조직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제외)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리가 발생됨
 - 노사관계법에 의해 단체교섭의 과정이 규제되고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제한적
 - 경영권에 속하는 채용, 배치, 해고, 정리해고, 승진, 전보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 즉, 근로조건에 관련 있는 사항만 교섭의 대상이 됨
- 1986년의 투자촉진법(Promotion of Investment Act)에 의거 선도산업(Pioneer Industry)의 경우에는 고용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은 금지됨
-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1개월 이내에 노사공동이 서명한 단체협약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협약서는 노동법원의 중재와 같은 효력이 발생됨
 - 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 이상이며, 노동법원에 따라 일용직 및 고용계약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제외됨(Award 86 of 1978)

(4) 단체행동과 직장폐쇄

-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파업을, 사용자협회는 직장폐쇄가 가능함
 - 파업은 조합원의 비밀투표로 2/3의 찬성이 필요하고, 직장폐쇄도 사용자협회 회원의 비밀투표로 2/3의 찬성이 필요함
 - 불법적인 파업이나 직장폐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엄격히 부과됨
- 합법적인 파업이 어려운 법적 체계로 인하여 노동조합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보다 온건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

- 1970년대 이후 파업발생건수가 미미한 수준이며, 2000년에 단 11건의 파업이 발생하였음(2,969명 참가, 총 근로손실 일수는 6,068일)
- 파업시 사용자는 대체고용 또는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경향이 높음

(5) 노동쟁의 조정제도

- 노사분쟁은 ① 노사간 재교섭 → ② 당사간의 교섭 실패시 행정관청에 의한 조정 → ③ 조정 실패시 노동법원에 의한 중재 순으로 해결됨
 - 행정관청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소지가 없으면 노동법원에 그 중재를 요청함
 - 중재는 노동법원(Industrial Court)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동법원은 중재를 요청 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결정을 해야 함
- 결국 강제중재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분쟁시 최후 수단이 되는 파업과 직장폐쇄를 실질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6) 근로자 고용(고용계약, 수습기간)

-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여 왔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많아(최근 금융위기 때 제외) 이직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 특히, 사무관리직의 경우 서구식 고용관행에 익숙하여 이직이 잦음
 - 비숙련인력은 주로 말레이인이나, 잦은 이직과 결근, 초과근무 기피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처하고자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고용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성립되나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피고용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외국인력 사용은 1990년부터 정식으로 허용되었으며, 임금수준은 비슷하며 결근이 없고(기숙사 숙식 때문) 계약기간 중에는 이직할 수 없다는 것이 장점이나 취업업종과 출신국가가 제한됨

- 대부분 근로자는 채용초기에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기간이 지난 후 업무성
과나 능력이 고용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계약 종료가능함

(7)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

- 1일 통상근로시간은 8시간, 1주 통상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1일 12시간, 1월 10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주일에 적어도 1일의 무급 주휴일을 부여(날짜는 고용주가 결정) 해야
하며,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을 포함하여 적어도 10일 이상임

-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월차휴가는 없음

- 근속기간 2년미만 : 최소 연간 8일
- 근속기간 2년이상 5년미만 : 최소 연간 12일
- 근속기간 5년이상 : 최소 연간 16일

- 병가도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부여됨

- 근속기간 2년미만 : 최소 연간 14일
- 근속기간 2년이상 5년미만 : 최소 연간 18일
- 근속기간 5년이상 : 최소 연간 22일
- 임원이 필요한 경우 : 최장 60일의 병가 부여

(8) 임금 및 수당

- 임금은 기본급·수당·상여금으로 구성되며, 수당의 종류는 우리나라에 비해
적고 상여금은 기업성과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상여금과 기업의 성과에
연관되어 지급되는 변동상여금으로 구성됨

-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호봉표가 없으므로 자동임금인상시스템이 아님

개별 근로자의 임금결정은 성과뿐만 아니라 근무태도·출근율·초과근무수용 여부 등이 고려되나, 특히 출근율이 중시됨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는 없으며 업종별 최저임금이 있으나, 실질적 영향력은 거의 없음

초과근무나 휴일근무시 근무시간의 장단에 따라 할증률이 차이가 나고 주휴일이 무급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높은 수당을 지급함

- 통상근로일의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임율(hourly rate of pay: HRP) 50% 이상 가산

- 휴일근무수당(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은 근무시간이 통상근로시간의 1/2 이하이면 통상임률(Ordinary Rate of Pay : ORP)의 50%를, 1/2을 초과하면 ORP의 100%이상 가산

- 공휴일 근무수당은 ORP의 200%이상 지급

연차수당(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또는 병가수당은 연가 또는 병가 중에 월급을 공제 없이 지급 받았다면 그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됨

(9) 고용계약의 종료(계약해지, 해고예고)

해고 등 고용계약 종료에 관한 법적 절차나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배상금이 부과됨

- 말레이시아 근로자는 개별적 권리보호에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관청(노동국)에 고발하는 경향이 있음

고용계약서나 단체협약에 퇴직연령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연령 도달시 고용이 종료되며, 기타 근로자의 귀책사유(불법행위, 계약 불이행 등)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함

- 성과부진의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전에 근로자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즉 상담·적절한 현장지도·훈련 및 경고 등이 선행되어야 상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고용계약시 계약종료(해고 예고)의 사전통보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사전통보기간은 고용주 및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고용계약기간이나 도급계약의 업무량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일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되며 사전통보는 불필요

- 고용계약에 사전통보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의 사전 통보기간은 다음과 같음

- 피고용인의 근속기간이 2년 미만 : 4주전 통보
- 피고용인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 : 6주전 통보
- 피고용인의 근속기간이 5년 이상 : 8주전 통보

- 사전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10) 정리해고

□ 정리해고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 시행이 매우 어려우며, 최근의 외환위기기간 중 정리해고된 근로자 수는 실제로 매우 적음

- 정리해고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용자가 정리해고 전 해고회피노력(신규채용 중단, 초과근무 제한, 배치전환, 임시해고, 임금삭감 등)을 할 것을 지도함

- 정리해고시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에 비해 우선 해고되며, 내국인 근로자는 늦게 입사한 사람이 우선 해고됨

- LIFO 원칙 적용(Last-In-First-Out Principle)

※ 실질적인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 근로자가 사전통보 없이 이직하였으나 이 같은 상황을 사용자가 조장한 것이라고 입증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사용자가 임금, 수수료, 수당 등을 자의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 주택, 식사 등 고용계약상의 복지혜택의 일방적인 중단
- 하위직으로 강등, 직무내용의 상당한 변경
- 피고용인을 모욕할 의도가 있는 고용주의 언사나 행위 등

(11) 퇴직금 및 정리해고수당

□ 고용주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정리해고수당을 차등 지급해야 함

- 근속 1년 이상~2년 미만 : 각 1년에 대해 10일의 임금
- 근속 2년 이상 5년 미만 : 각 1년에 대해 15일의 임금
- 근속 5년 이상 : 각 1년에 대해 20일의 임금

(12)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 출산 직전 지난 4개월간 하루라도 고용되어 있었거나 지난 9개월간 적어도 90일을 초과하여 같은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0일의 유급 출산휴가가 가능함

- 출산수당 지급에 있어 출산시점이나 출산휴가 신청시 해당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
- 출산전 9개월간의 고용주가 1인 이상인 경우에 피고용인은 본인이 원하는 고용주에게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간의 비용분담문제는 고용주간 민법상의 절차에 의해 해결이 됨

5) 한국의 노동제도

(1) 노동정책

- 1980년대까지는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에 따라 노동조합을 통제하고 근로조건을 제한하는 입장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새로운 협력적 노사자치주의 정책을 전개 중임
 - 초기업단위 복수노동조합 허용, 근로조건 지속적 개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등
- 199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사 안정화 정책으로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 운영 내실화, 노동쟁의 조정노력 강화, 엄정한 법집행 등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노동법률의 탄력적 적용뿐만 아니라 선진화시대 진입에 따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정책이 지속 검토 중
 - 경제특구 노동법률 완화, 근로시간 및 휴일제도 개선, 법정보험 적용 확대 등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최소 2인 이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직형태는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수임
 - 기업별 단위에서 복수노동조합은 2006년말까지 설립이 금지되며, 실업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고 있음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와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시·도지사 또는 노동부장관)에 설립신고를 해야 함
 - 설립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은 심사 후 보완요구, 반려 등이 가능함

- 노동조합에 전임자를 두는 경우 전임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07년부터는 전임자 임금지급은 불법이 됨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의 목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한도에서 정치활동도 가능함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자율적인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음
 - 인사 및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은 제한적으로 교섭이 가능하고, 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개별교섭이 일반적인 교섭형태임
- 단체교섭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가 서명, 날인한 후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 내에서 노사간 자율결정이 가능함
-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음

(4)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 노사간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사 일방은 노동쟁의 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조정이 끝나기 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조정전치주의)
-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됨

□ 쟁의행위기간 중에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 외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 근로케 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 할 수 없음

- 당해 사업내의 근로자 및 타 사업장 근로자의 대체근로는 가능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조치로서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

(5) 노동쟁의 조정절차

□ 노동쟁의는 ① 노사간 교섭 → ② 교섭 실패시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 ③ 조정실패시 쟁의행위 또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 순으로 진행됨

□ 노사간 분쟁은 자주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 제3자 혹은 공적기구(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가능함

- 조정기간은 일반기업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은 15일

□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어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가 가능하며, 중재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6) 노사협의회제도

□ 3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의무적임

-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 경영·인사사항 및 근로조건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협의, 의결하고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

(7) 근로자 고용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

- 파견근로의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고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장애인, 국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일정비율의 채용의무화제도가 있음

□ 근로계약시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을 명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보관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됨

- 수습기간(통상 3개월이내)을 정하여 업무능력, 적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외국인은 국내 근로자가 수행이 가능한 부문(단순 생산 등)에는 사용이 제한됨

- 외국인력 산업연수생제도(쿼터제)를 운영 중

(8)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이며,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함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00~06:00)시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

□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탄력적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재량근로시간 등)은 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노사협의로 할 수 있음

□ 주휴일은 1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시는 50%의 가산 임금을 지급

□ 공휴일은 연간 약 16일이며, 근로여부 및 유급여부는 노사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유급휴일로 운영되는 것이 보편적임

- 근로자의 날을 법으로 지정(유급)

□ 연차휴가는 1년 개근시 10일, 9할 이상 근로시 8일 부여(유급)되며 2년이상 근속시는 초과하는 1년당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하여 부여됨

□ 월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되며 유급임

(9) 임금 및 수당

- 임금은 통상 기본급·수당·성과급·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최근 3개월간)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음
 - 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산정시 반영
 - 통상임금 :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의 할증수당 산정시 반영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각각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제 운영중이며 매년 (9월1일~다음해 8월31일) 단위로 최저임금액이 조정됨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시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함

(10) 고용의 종료(퇴직, 해고)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됨
 - 근로자의 계약조건 위반·무단결근·불법쟁의행위·업무지시 불복종 등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기해야 함
- 고용관계는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는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 기타 사용자의 일반해고 또는 징계해고 등으로 종료됨
-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 또는 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11) 정리해고

- 사용자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음

-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로 인한 경영위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수·양도·합병 등의 사유

- 정리해고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함

- ①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배치전환,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 등)의 이행
- ②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 ③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 사전협의(해고 60일전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 ④ 일정비율 이상 해고시 노동부장관에 신고 등

(12)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됨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일부가 지급됨

-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경우 1년 이내 동안 휴직이 가능함 (무급)

- 여성의 생리휴가는 월 1일의 유급휴가가 가능하나, 미사용시 가산임금은 없음

2. 노동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1) 노동정책

- 경쟁국 다수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 개입, 조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중국은 한국에 비해 강력한 노동개입정책으로 노사관계가 매우 안정적임

〈 표 V-1 〉 각국의 노동정책 비교

구 분	내 용	요 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노사관계는 전통적인 노사자치원칙에 따라 정책적인 관여가 적은 편 - 최근 경제부흥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개입 및 노사안정화노력 증가 	노사자치 및 정부개입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한 공공정책과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여 무분규상태 지속 - 연도별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 경쟁력의 저하를 방지 	강력한 정부개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노동관련 법률 정비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노동관련 제도개선 -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추세에 대해 노사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여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형성 되도록 적극 관여 	제도정비 노사안정에 적극개입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 위주 정책으로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개입으로 노사안정화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는 우리나라 보다 더 적극적 	강력한 정부개입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질서 하에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및 권리보호 강화 추세 -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력적인 신노사문화 창출노력 전개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2) 노사분규

- 주요경쟁국들은 노사분규에 대하여 노사자치보다는 행정관청의 직접적 개입이나 사전 규제가 우리 나라보다 매우 강한 편임
- 중국은 단체행동권이 없으므로 쟁의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정부가 강력한 조정 및 중재기능을 하고 있어 쟁의행위가 거의 없는 편임

< 표 V-2 >

각국의 노사분규 비교

구 분	내 용	요 점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별 노동조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발생 할 경우 전국적, 대규모로 파급효과가 큼 -쟁의행위 근로자는 무노동·무임금이 원칙 -사용자의 파업 시 대체근로가 가능 	노사자치 및 균형유지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분규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 -정부의 강력한 조정 및 중재제도 운영 -최근 수십년간 무분규 상태 지속 	무분규 상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간 단체노동계약이 증가됨에 따라 노동쟁의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화해나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행동은 불가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있고 단체행동권은 없음 	단체행동권 없음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쟁의행위가 가능하나 합법적 파업이 어렵고, 불법파업시 높은 형벌이 부과되므로 실제 파업발생은 미미 -정부의 강력한 조정 및 중재제도 운영 -사용자의 직장폐쇄 및 대체고용 가능 	파업 발생 미미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쟁의 발생시 조정전치주의로 조정 후에 쟁의행위가 가능 -평소에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나, 매년 정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시 노사분규가 다수 발생 -쟁의행위가 대규모,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가능하나, 대체근로는 금지 	임단협 전후 분규 발생 쟁의행위가 대규모, 장기화 경향

5)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 경쟁국의 근로시간 운영은 비슷한 수준이며, 각각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운영 중
- 한국의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운영하는 점, 월차 및 생리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점, 근속에 따른 연차휴가의 상한선이 없다는 점 등이 특징임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근속에 따라 14일~22일간의 병가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특징임

〈 표 V-5 〉 각국의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비교

국 가 구 분	영국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법정 근로시간	주당 평균 48시간이내	1일 8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48시간	1일 8시간 1주 44시간
연장 근로시간 제한		1일 4시간 월 72시간	1일 3시간 월 36시간내	1일 12시간 1월 104시간	주1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	규정 없음	2주간 88시간내	월, 분기, 년 단위	-	2주 단위 4주 단위
주휴일	주 1일 (통상 2일) (무급)	주 1일 (무급)	주 2일 (무급)	주 1일 (무급)	주 1일 (유급)
공휴일	8일 은행휴무일	12일 (유급)	약 10일 (유급)	최소 10일	17일 (유급)
연차휴가	4주~6주	7~14일 (*병가 14일)	규정 미정 (5일~14일)	8일~16일 (*병가 14일)	10일+ 근속년수
월차휴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월1일 (유급)
생리휴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월1일 (유급)
출산휴가	6주 (수당 90%)	8주 (유급)	90일 (유급)	60일 (유급)	90일 (60일유급)

6) 임금 및 수당

- 임금은 업적과 능력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수준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중국의 경우도 집단 근로계약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영국, 중국, 한국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운영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적정임금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단체교섭으로 임금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
- 주휴일, 공휴일이 무급인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는 휴일에 근로할 경우 높은 할증임금을 적용함
-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퇴직 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법정퇴직금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음

< 표 V-6 >

각국의 임금제도 비교

국 가 구 분	영국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최저임금 제도	시행	없음 (임금가이드 라인 제시)	시행	없음 (업종별 가이드라인)	시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할증률	단체협약 결정	50% (휴일100%)	50% (주휴일100%) (공휴일200%)	50% (휴일50~100%) (공휴일200%)	50%
휴업수당	보증임금	규정 없음	근로계약으로 규정	규정 없음	평균임금의 70%
퇴직금	규정없음	5년이상 근속시 청구가능 (금액은 상호협약)	근속1년에 30일 임금 (12개월한도)	근속1년에 10일~20일의 임금	근속1년에 30일 임금 (한도없음)

3. 한국의 노동제도 발전방향

- 외국인투자 유치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경쟁국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노동정책의 전개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 노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무 밀착지원(전담감독관 활성화, 전문가 배치)
 - 경제특구 내 노동의 유연성 확대(근로시간, 휴일·휴가, 해고 등)
 - 노사분규의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지원을 강화하고, 분규발생시 적극적인 조정(調整) 역할 수행(조정담당자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원칙 준수,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 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상생(相生)의 노사관행 정착이 필요함
 - 근로자의 파업시 과도한 임금 또는 위로금 지급의 관행 개선
 - 근로자의 불법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 국제기준과 룰(Rule)에 맞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노사부문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과제임
 - 임금수준 및 해고에 있어서의 유연성 확보 및 과도한 위로보상금 지급관행 해소
 - 파견근로자의 사용업종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개선하여 외투기업에 대한 적용을 완화하거나(한시 유예) 부담금제로 전환
 -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휴일 및 휴가일수의 조정과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 확대 (현행 2주, 4주 단위에서 6개월 이상으로)

VI. 결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투자유치정책은 타제도 분야와 연계되어 있으며, 모두 투자유치수단으로서 투자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외국인투자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목표가 변경되거나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 각국은 경제환경에 맞는 투자유치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투자인센티브제도와 투자유치조직 설립, 조세제도 및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있음
- 향후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정책목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환보유고 증대의 양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산업구조고도화 및 지역의 균형적 개발 등 보다 질적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따라서 투자정책, 산업입지, 조세제도, 노동정책 등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 나라 투자유치환경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i) 투자정책분야

- 단계별 투자유치 목표설정 : 장기, 중단기 및 순차적 세부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명확한 단계별 투자유치목표 설정은 하부 유치기관의 지원방향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투자유치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할 수 있을 것임
- 투자정책목표의 전환 :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의 양적 확대기능보다는 산업구조도화, 지역의 균형발전 기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함

- 업무의 효율성 제고 : 투자체계내 역할을 명확히하고 전문화함으로써 투자 촉진활동에 투입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방지해야 할 것임. 즉 투자정책 수립은 중앙정부, 홍보 및 촉진활동·투자정보 등 투자인프라구축은 KOTRA, 공장설립 등 투자물의 가치화 과정상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이 바람직함
- 투자자 입장에서의 서비스 제공 : 투자결정은 결국 투자자의 몫이므로 이들의 요구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투자지원수단제도를 정립함
- 투자유치관련 인력의 역량강화 : 투자유치는 투자유치기관 및 기관종사자의 투자유치능력에 좌우되는바 투자분야 전문가의 육성과 외부전문가 활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ii) 산업입지분야

- 지역요소를 반영한 산업입지 지정조건 및 인센티브 설정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조건 및 인센티브에 대해 지역조건과 지역산업을 반영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활용방안 모색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또는 낙후지역에 한해 관련 규정의 차별적 적용을 모색하여 분양활성화 및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
- 산업입지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 우리 나라는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전용공단·관세자유지대·무역자유지대 등 다양하고 유익한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 대한 홍보활동이 저조한 형편임. 따라서 수요자중심의 입지정책인 외국인투자지역제도에 대한 체계적 홍보를 통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모색
- 외국인투자지역의 국가·지방정부간 분담비율을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수준으로 조정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iii) 조세제도분야

-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력 제고방안 마련 : 법인세 및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잡한 조세제도를 이해하기 쉬운 체제로 만듦으로서 조세가 또 다른 규제라는 인상을 지워야 할 것임
-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검토 : 중국과 같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정책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R&D 및 동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 검토 : 외국인투자를 확대유도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시행중인 기존의 R&D 및 동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보완하여 공제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Infra-Structure 확충에 대한 조세감면 검토 : Infra-Structure를 확충하여 기업의 경영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iv) 노동제도분야

-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홍보노력 강화 : 외국인투자 유치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개방적 노동정책 실행 못지 않게 그동안 정부가 시행한 노동개선 사항 및 제도에 대해 적극적 홍보 필요
- 노사관행 정착을 위한 법과 원칙준수 : 제도개선과 아울러 노사 양자간 제도의 합법적 준수노력을 도모. 무노동·무임금원칙, 근로자 파업시 임금·위로금 등 지급관행의 제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및 관련비용 지원 등을 원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노사관행 정착을 위한 ‘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
-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적용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
- 국가경쟁력에 부응하는 노동의 유연성확보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요건의 탄력적 적용, ‘경영상 이유’의 확대 해석 지속 및 탄력적 고용승계, 과도한 위로보상금 지급관행의 해소, 노동부문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과 룰에 맞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 추진

참고문헌

< 국 내 >

- Anderson & Jones Lang LaSalle, 2001. 『지식기반사업 육성전략 및 수도권 정책 전환방안』
- 경제단체연합회, 2000. 『복수노조합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경영계 입장』
- 한국국제노동재단, 2001. 『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I)』
- 김승진, 1999.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김완순, 임성훈, 2000. “투자진흥기관의 투자유치활동이 외국인투자유입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5권1호, pp.109~129
- 김형배, 1998. 『노동법』, 박영사
- 노동부, 2001. 『말레이시아의 노무관리법제 및 관행』
- _____, 2001.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집』
- _____, 2001. 『유럽연합의 근로기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2. 『주요경쟁국 투자유치 정책 및 다국적기업 거점 유치현황 실태조사』
- _____, 2001. 『중국투자실무가이드』
- _____, 2002. 『WTO 최신 중국경제법령집』
- _____, 2002. 『중국의 주요 개발구 투자환경과 진출사례』
- 대한상공회의소, 1998. 『중국진출기업의 노사관계 현황과 노무관리현지화 전략』
- _____, 1999. 『주요국의 노동관행 및 법제비교』
- 매일경제신문사, 2002. 『중국투자에 필요한 중국법 해설』
- 산업연구원, 1999.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및 신규지정 방안』
- 신동화, 1998. 『주요국의 투자자관계 관리사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1. 『외국인직접투자 업무편람』
- 이만수, 2001. 『중국에서의 기업경영』, 청림출판
- 이병태, 2002. 『노동법』, 중앙경제
- 이상윤, 1998. 『노동법』, 법문사
- 이성봉, 이형근, 1998.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인센티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무송, 1997. 『영국의 노동정책 변천사』, 한국노동연구원,

- 임성훈, 1999. 『외국인투자 집중유치기업 선정 및 전략적 활용방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_____, 1999.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_____, 2002. 『중국투자 입지선정을 위한 제언』, KOTRA 기획조사 02-28
- _____, 1999. 『외국인투자유치와 투자진흥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_____, 2000. “외국인투자정책목표와 투자인센티브간 적합성에 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3호, pp.187~202
- _____, 2002.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와 방향”, 지방의 국제화 포럼 2002년 7월호,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pp.32~35
- _____, “현지국 국가위험도 변화가 외국인 신규투자 및 추가투자에 미치는 영향” 국제통상연구, 제4권2호, 1999, pp.209~226
- 재정경제부, 1999.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_____, 2001.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2001』
- 조우현, 2002. 『노동경제학』, 법문사
- 조혜영, 1999. “과학단지의 특성과 기업연계 : 영국사례연구”
- 한국무역협회, 1998.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 주요국과의 외국인투자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_____, 2002. 『중국 비즈니스 실무가이드』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2. 『한국산업단지총람』
- _____, 아시아개발연구원, 1998. 『공장설립제도 국제비교』
- _____, 2002.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적정 후보지 선정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국 외 >

- Fraser, Andrew, 1999. “Case Study: UK’s Invest in Britain Bureau (IBB)” in *Industrial Glob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Impact and Consequences for Asia and Korea*, East -West Center
- Rajkumar K. 2002. *Malaysian Labour Laws Made Simple*
- Kotler, Philip, Somkid Jatusripitak and Suvit Maesincee, 1997. *The Marketing of N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 Lim, Sung-Hoon, 1999. *Strategies for Inducing Investment*, Seoul: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_____, 2000.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and Incentives*,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_____, and Chang H. Moon, 2001. "Effects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Home Country Exports : The Case of Korean Firms", *Multinational Business Review*, Spring, pp. 42~49.
- _____, and Hey-Sue Shin, 2002. "Strategic Fit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of Korea : The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U.K., Malaysia and Singapore", *Journal of Korea Trade*, Vol. 6. No. 1, pp. 99~114
- Loree, David W. and S. Guisinger, 1995. "Policy and Non-policy Determinants of U.S. Equity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 No. 2. Second Quarter
- Mariotti, Sergio and Lucia Piscitello, 1995. "Information Cost and Location of FDIs Within the Host Country: Empirical Evidence From Ital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ourth Quarter
-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 China, 2002. *China Investment Guide*
- Ministry of Manpower in Singapore, 1997. *Guide to The Employment Act*
- _____, *Trade Unions Act*
- _____, *Industrial Relations Act*
- Shanghai Foreign Investment Commission, 2002. Shanghai Foreign Investment Development Board Shanghai Guide to Investment.
- Singapor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02. *The investor's Guide to Singapore*
- Tan, Augustine H, 1999. "Official Efforts to Atractive FDI : Case of Singapore's EDB" in *Industrial Glob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Impact and Consequences for Asia and Korea*, East-West Center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1996. *Incentiv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ublication*
- _____, 1998. *World Investment Report 1998: Trends and Determinants*, New york and Geneva :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ublication
- _____, 1999. *Scope and Definition*, New York and Geneva :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ublication
- _____, 2002.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Transnational Corportations and Export Competitiveness*, New york and Geneva : United

- Nations, United Nations Publication
- Velic, Boris, 1999. "Ireland's Experience in Attracting FDI : A Case Study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IDA)" in *Industrial Glob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 Impact and Consequences for Asia and Korea*, East-West Center
- Wells, Louis T. and Alvin G. Wint, 1990. *Marketing a Country*, Washington, D.C.: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 對外貿易經濟合作部, 2002. 『中國外資統計』
- 對外貿易經濟合作部外資司, 2002. 『中國投資指南』

< 홈페이지 >

- 국세청 홈페이지
- Taxation, Inland Revenue of UK 홈페이지
- Taxation,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홈페이지
- Taxation,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홈페이지
- Jurong Town Corporation 홈페이지
- Multimedia Super Corridor 홈페이지
- Malaysi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홈페이지
- Invest-UK 홈페이지
-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홈페이지
- 포동시 정부 홈페이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KISC)
종합행정지원실

2003.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전화 : (02) 3460-7573
팩스 : (02) 3460-7946
[http ://www.kisc.org](http://www.kisc.org)